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소득계층별 실질부담수준

전 병 욱 (연구책임자)

2010. 12.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소득계층별 실질부담수준

전 병 옥(연구책임자)

2010. 12.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소득계층별 실질부담수준

2010.12.

연구책임자: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제 출 문

국회 입법조사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소득계층별 실질부담수준」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12월

전병욱

요약

직접세와 달리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이고 대부분 소비재만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간의 역진성을 나타내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소득재분배와 관련한 간접세의 이러한 문제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소득계층별로 실제 간접세의 부담이 얼마나 차이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나 체계적인 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간접세가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킨다는 일반적인 논의가 타당한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로 간접세의 부담이 어떻게 차이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현행세제가 소비형 간접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경제주체의 소득과 소비금액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해야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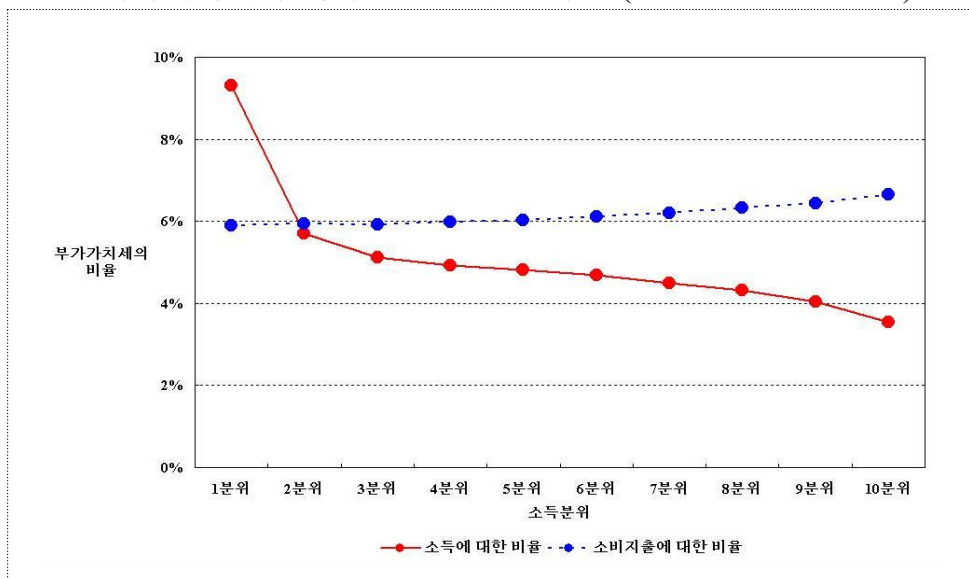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소득계층별로 간접세의 부담수준을 실증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연구상 공백을 보완하였다. 실증분석 대상인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이고, 실증분석을 위해 면세를 통한 부가가치세의 암묵적 전가가 발생하지 않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비해 충분히 크다는 것 등의 가정을 적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먼저 동등화지수의 방법 중에서 “square root scale”에 따라 가계동향조사의 조사대상 가구를 10개의 소득계층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소비지출액이 큰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크게 증가하지만 동(同)부담액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오히려 점차 낮아져서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 부담이 역진적(regressive)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양한 기초생활 필수 재화 및 용역과 국민후생을 위한 재화 및 용역 등에 광범위하게 면세를 규정하기 때문에 소비지출액 중에서 이러한 재화나 용역의 구입금액(식료품, 주거 및 수도광열비용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 하위 소득계층에서 소비지출액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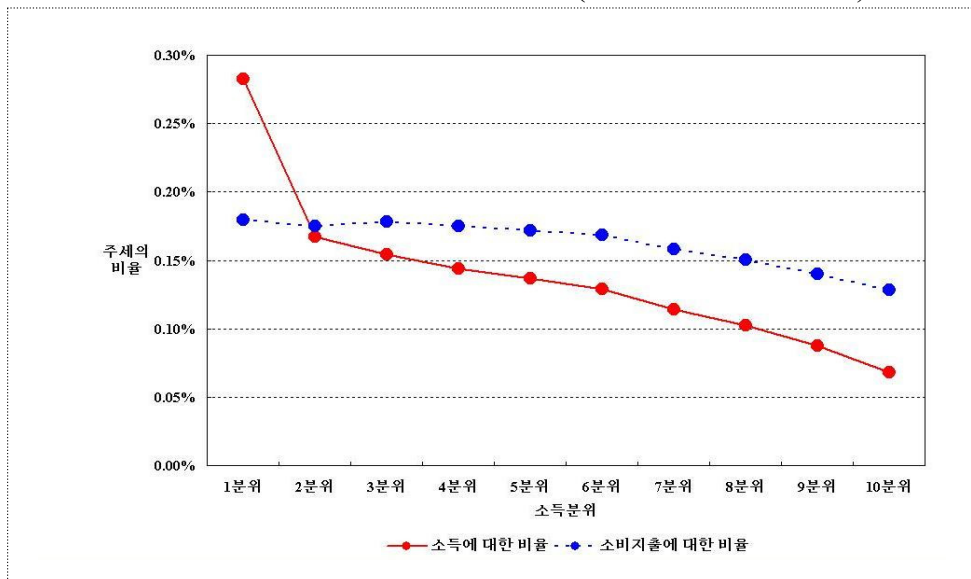
<부가가치세 부담액의 소득분위별 비율 (2006년-2009년 평균)>



다음으로 주세 부담액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상위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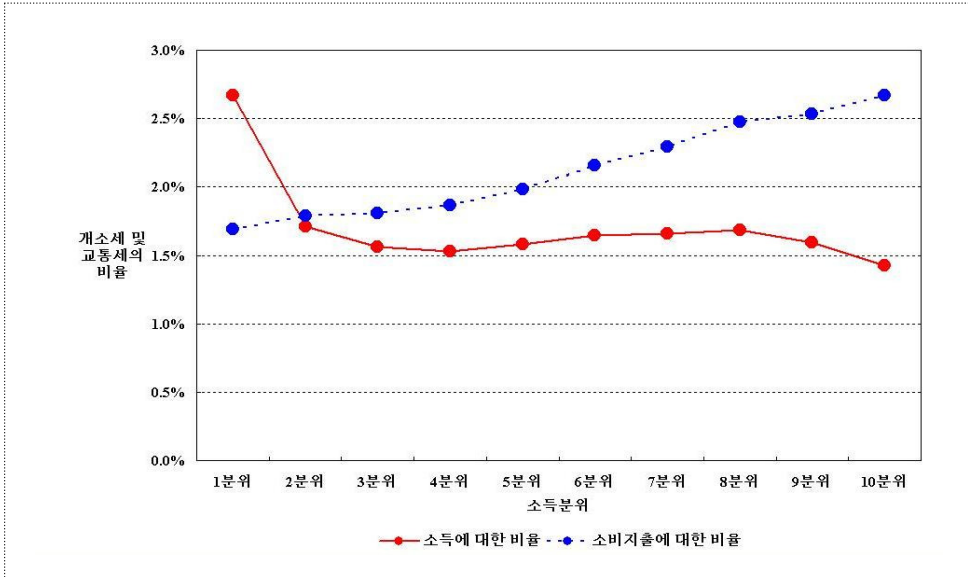
득계층일수록 점차 낮아져서 소득계층별 주세 부담액이 역진적 (regressive)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세 부담액이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부가가치세의 경우와 다르게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완만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세 부담액의 소득분위별 비율 (2006년-2009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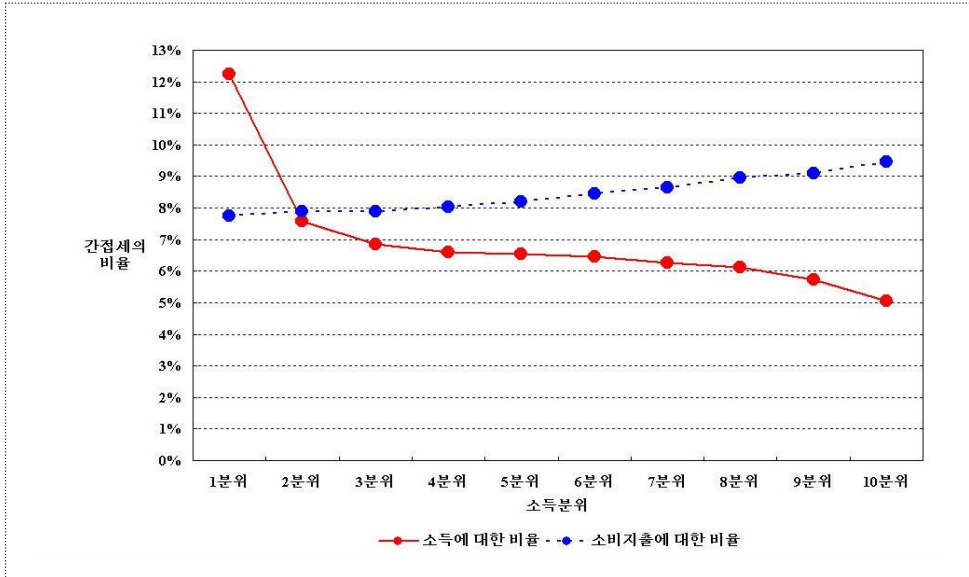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개별소비세와 교통세의 부담액도 부가가치세의 경우와 유사하게 소비지출액이 큰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크게 증가하지만 동(同)부담액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오히려 대체적으로 낮아져서 소득계층별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 부담이 역진적(regressive)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 부담액이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교통세 부담액의 소득분위별 비율 (2006년-2009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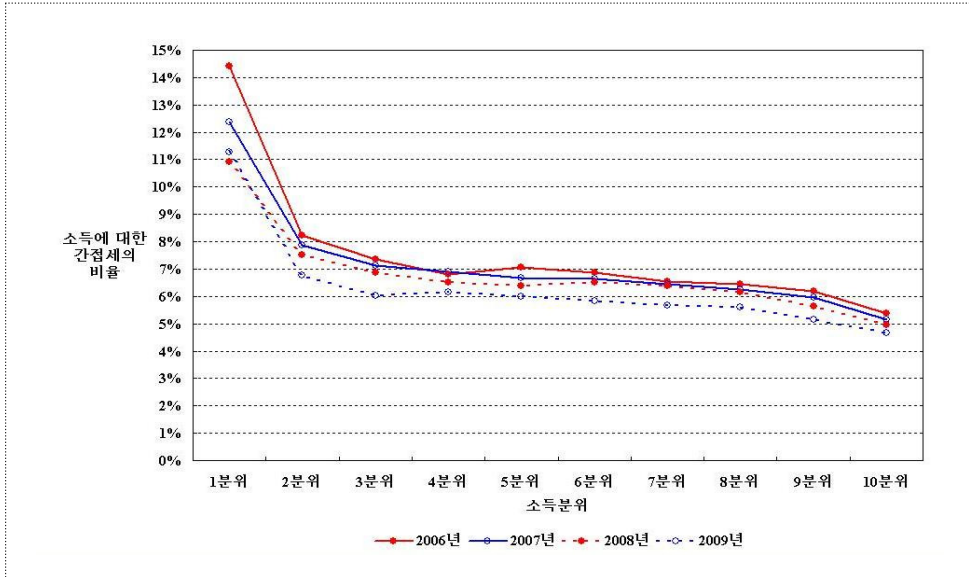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전체적인 간접세 부담도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경우와 유사하게 소비지출액이 큰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크게 증가하지만 동(同)부담액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오히려 대체적으로 낮아져서 소득계층별 간접세 부담이 역진적(regressive)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간접세 부담이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개별 세목의 경우와 대개 마찬가지로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간접세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분석결과가 전체적인 간접세의 분석결과에도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간접세 부담액의 소득분위별 비율 (2006년-2009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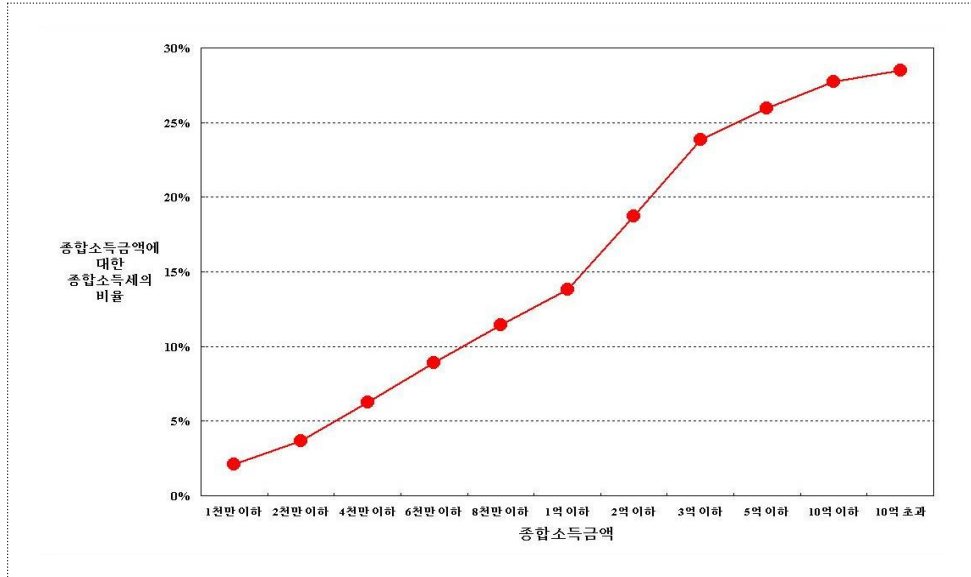
간접세 부담액의 누진성(소득에 대한 간접세의 비율)을 연도 및 소득계층별로 구분하면 개별 연도별로도 간접세의 역진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득에 대한 간접세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매년 소득이 증가하지만 증가하는 소득이 전액 소비·지출되지 않고 저축되는 부분의 비율이 매년 커지기(즉, 평균소비성향이 체감하기) 때문인 것이다.

<연도 및 소득분위별 간접세 부담액의 비율>



비교목적으로 소득계층별 간접세 부담액의 비율(간접세 부담액÷소득)을 직접세인 종합소득세의 소득계층별 부담액의 비율(종합소득세 부담액÷종합소득금액)과 비교하면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간접세 부담액의 비율이 낮아지는 간접세의 결과와는 전혀 다르게 직접세인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누진세율 등의 영향으로 인해 조세부담에 뚜렷한 누진성(progressivity)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 규모별 종합소득세 부담액의 비율 (2008년-2009년 평균)>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해 최근 재정건전성의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재정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간접세제 개편방안이 조세부담의 공평성 측면에서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이후의 조세제도의 개편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래의 조세제도 개편을 논의할 때에는 편의적인 간접세의 증세로 인한 조세부담의 공평성의 악화와 소득계층간의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직접세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차 례

□ 요약

I. 서론 /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II. 우리나라의 간접세 과세제도의 개요 / 6

- 1. 부가가치세 6
 - 가.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6
 - (1) 과세대상 6
 - (가) 재화 7
 - (나) 용역 7
 - (2) 과세거래 8
 - (가) 재화의 공급 8
 - (나) 용역의 공급 9
 - (다) 재화의 수입 9
 - (3) 납세의무자 9
 - 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방법 10
 - (1) 과세표준 10
 - (2) 세율 10
 - (3) 거래징수 10
 - (4) 납부세액 11
 - (5) 간이과세 11

(가) 간이과세자	11
(나) 과세표준과 세액	12
다. 부가가치세 이론의 적용	13
(1) 소비형 부가가치세	14
(2) 전단계세액공제법	15
(3) 영세율과 면세	16
(가) 영세율	16
(나) 면세	17
라. 영세율과 면세	18
(1) 영세율의 적용대상	18
(2) 면세의 적용대상	19
2. 주세	20
가. 과세대상과 세율	20
나. 세후가격의 분석 및 실증분석을 위한 가정	22
3. 개별소비세	23
가. 과세대상 및 세율	23
나. 세후가격의 분석 및 실증분석을 위한 가정	27
4. 교통세	28
가. 과세대상 및 세율	28
나. 세후가격의 분석 및 실증분석을 위한 가정	29
III. 연구설계 / 31	
1. 실증분석 대상자료	31
가. 가계동향자료의 개요	31
(1) 조사목적	32
(2) 조사대상	32

(3) 조사방법	32
(4) 표본설계	33
(5) 표본규모	33
나. 가계동향자료의 조사항목	34
(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34
(2) 주류 및 담배	36
(3) 의류 및 신발	36
(4) 주거 및 수도광열	37
(5)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37
(6) 보건	38
(7) 교통	39
(8) 통신	40
(9) 오락·문화	40
(10) 교육	42
(11) 음식·숙박	43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43
2. 실증분석을 위한 이론적 가정	44
가. 물품세 귀착의 분석	44
나.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가정	46
IV. 실증분석의 결과 / 48	
1. 소득계층의 구분과 가구소득의 분석	48
2. 가구소비지출액의 분석	57
3. 소득계층별 간접세 부담의 분석	65
가. 부가가치세	65
나. 주세	72

다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	80
라. 간접세의 전체적인 소득계층별 부담수준	86
마. 직접세의 소득계층별 부담수준과의 비교	93

V. 결론 / 95

참고문헌

표 차례

[표 2-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에 해당하는 사업	7
[표 2-2] 업종별 부가가치율	12
[표 2-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13
[표 2-4] 주류의 종류에 따른 주세의 세율	21
[표 2-5] 주세액에 대한 교육세율	22
[표 2-6]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24
[표 2-7] 실증분석 기간(2006년-2009년) 동안의 개별소비세율의 변동 ...	25
[표 2-8]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26
[표 2-9] 개별소비세액에 대한 교육세율	26
[표 2-10] 개별소비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율	27
[표 2-11] 실증분석 기간 이후의 교통세율의 변동	28
[표 4-1] 2006년의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51
[표 4-2] 2007년의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52
[표 4-3] 2008년의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53
[표 4-4] 2009년의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54
[표 4-5] 2006년의 소득분위별 가구소비지출액	58
[표 4-6] 2007년의 소득분위별 가구소비지출액	59
[표 4-7] 2008년의 소득분위별 가구소비지출액	60
[표 4-8] 2009년의 소득분위별 가구소비지출액	61
[표 4-9] 2006년의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부담 수준	66
[표 4-10] 2007년의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부담 수준	67
[표 4-11] 2008년의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부담 수준	68

[표 4-12] 2009년의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부담 수준	69
[표 4-13] 2006년의 소득분위별 주세 부담 수준	73
[표 4-14] 2007년의 소득분위별 주세 부담 수준	74
[표 4-15] 2008년의 소득분위별 주세 부담 수준	75
[표 4-16] 2009년의 소득분위별 주세 부담 수준	76
[표 4-17] 연도별 유류제품 평균 판매가격	80
[표 4-18] 2006년의 소득분위별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 부담 수준 ...	81
[표 4-19] 2007년의 소득분위별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 부담 수준 ...	82
[표 4-20] 2008년의 소득분위별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 부담 수준	83
[표 4-21] 2009년의 소득분위별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 부담 수준	84
[표 4-22] 2006년의 소득분위별 간접세 부담 수준	87
[표 4-23] 2007년의 소득분위별 간접세 부담 수준	88
[표 4-24] 2008년의 소득분위별 간접세 부담 수준	89
[표 4-25] 2009년의 소득분위별 간접세 부담 수준	90

그림 차례

[그림 3-1] 물품세 부담의 귀착의 분석	45
[그림 4-1] 연도별 및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55
[그림 4-2] 소득분위별 소득구성 비율 (2006년-2009년 평균)	56
[그림 4-3] 연도별 및 소득분위별 가구소비지출액 (2006년-2009년 평균) ...	62
[그림 4-4] 연도별 및 소득분위별 가구수지 (2006년-2009년 평균) ...	63
[그림 4-5]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구성비율 (2006년-2009년 평균)	64
[그림 4-6] 부가가치세 부담액의 소득분위별 비율 (2006년-2009년 평균) ...	70
[그림 4-7] 주류소비의 소득분위별 구성비율 (2006년-2009년 평균) ...	77
[그림 4-8] 주세 부담액의 소득분위별 비율 (2006년-2009년 평균) ...	79
[그림 4-9] 소비지출액 중 주류의 소득분위별 비율 (2006년-2009년 평균)	79
[그림 4-10] 개소·교통세 부담액의 소득분위별 비율 (2006년-2009년 평균)	86
[그림 4-11] 간접세 부담액의 소득분위별 비율 (2006년-2009년 평균)	91
[그림 4-12] 연도별 및 소득분위별 간접세 부담액의 비율	92
[그림 4-13] 종합소득금액 규모별 종합소득세 부담액의 비율 (2006년-2009년 평균)	94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와 달리 간접세는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다른 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입법자가 예정하고 있는(즉,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이고 대부분 소비재만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간의 역진성(regressivity,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세부담의 비율이 더 낮아지는 특징)을 나타내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박기백 등(2006)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가구별 소득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직접세와 정부의 이전지출 및 사회보장기여금이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로 측정된 소득불평등을 6.6% 개선시킨 반면 간접세는 소득불평등을 0.5%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¹⁾.

연도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중에서 간접세의 비중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41.7%에서 45.7%까지의 수준인데 동(同)비율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²⁾, 이로 인해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영

1) 박기백 등(2006)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및 담배소비세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단,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는 실증분석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박기백 등(2006)은 세목별로 분석할 경우에는 담배소비세와 주세는 역진성이 높은 반면 부가가치세는 세부담이 비례적인 모습에 가까운 미약한 역진성을 나타낸다고 했고, 추가적으로 특별소비세와 교통세도 매우 미약한 역진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향도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간접세가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킨다는 일반적인 논의가 타당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同)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로 간접세의 부담이 어떻게 차이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조세정책의 수립이나 평가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실증분석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2. 연구의 목적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소득재분배와 관련하여 지적되는 간접세의 문제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소득계층별로 실제 간접세의 부담이 얼마나 차이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나 체계적인 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국세청의 연도별 국세통계연보에서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소득계층별 신고 및 납부실적을 제공함으로써 직접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同)세목의 소득계층별 부담수준을 측정할 수 있고, 다수의 실증연구(전병욱과 최원욱(2007), 정운오와 전병욱(2010) 등)에서도 수집한 표본자료(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등)를 바탕으로 동(同)세목이 전체적으로 또는 특정 제도(법인세 최저한세 제도, 종합소득세

- 2) 국세통계연보에서 비교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가들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일본은 37.4%에서 40.6%까지의 수준이고, 미국은 5.5%에서 8.2%까지의 수준이고, 영국은 40.0%에서 43.8%까지의 수준이고, 독일은 56.3%에서 58.6%까지의 수준이고, 프랑스는 58.0%에서 58.8%까지의 수준이며, 이탈리아는 46.4%에서 49.4%까지의 수준이다. 즉, 비교대상 중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제외한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간접세의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득공제 제도 등)를 통해 소득계층별 조세부담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간접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공식적인 통계나 실증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이것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특성 때문에 납부세액만을 바탕으로 소득계층별 조세부담의 수준을 측정할 경우에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접세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조세부담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경제주체의 소득자료 외에 지출자료까지 분석해야 납세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른 간접세의 특성을 반영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현행세제가 소비형 간접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경제주체의 소득과 소비금액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해야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간접세 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절한 실증분석의 연구방법론을 채택함으로써 선행연구의 공백을 보충하고 간접세제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가구별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해서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이상의 연구목적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이하 편의상 “가계동향자료”)를 이용해서 실증분석을 하였다. 특히, 가계동향자료는 연도별로 400개 정도의 소비항목을 세분하여 측정함으로써 간접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일반 소비세의 성격을 가지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미시적으로 분석

하는데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³⁾.

또한, 가계동향자료를 이용한 본 연구의 분석범위는 동(同)자료에 1인가구에 대한 조사자료가 포함된 2006년부터 2009년까지로 하였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두되 본 연구에서는 다른 간접세들도 분석대상에 포함시키는데 분석대상인 간접세의 구체적인 범위는 OECD 조세 분류체계에서 소비과세 세목들로 하였다.

즉, OECD⁴⁾ 조세분류체계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세를 분류한 기획재정부의 ‘조세개요’(2010)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관세, 교육세(주세·개별소비세·교통세·금융보험업자수입분) 및 농어촌특별세(개별소비세·관세감면분)가 소비과세(consumption) 세목에 해당하는데⁵⁾ 이들 세목들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이들 세목 중에서 금융보험업자수입분에 대한 교육세는 직접세에 해당하고, 관세와 관세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내국세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범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간접세는 부가세(surtax)를 본세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크게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조세를 대상으로 가계동향자료를 이용해서 실시한 본 연구

3) 연도별 국세통계연보에서 의하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간접세의 합계에서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79.4%에서 81.2%의 수준이다(단,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전화세와 증권거래세는 간접세에 포함되었고, 실증분석의 대상에 포함한 교통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4) “Revenue Statistics, SPECIAL FEATURE: TAXES PAID ON SOCIAL TRANSFERS”에서 인용

5) 그 밖에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소득세·법인세 감면분)은 소득과세(income and profits)에 해당하고,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분)는 재산과세(property)에 해당하며, 과년도 수입은 기타(other taxes)에 해당한다.

의 실증분석 결과는 10분위로 구분한 소득계층별 간접세 부담이 분위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높아져서 역진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나머지 부분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II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간접세 과세제도를 개관하고, 제III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설계를 제시하며, 제IV장에서는 실증분석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였다.

II. 우리나라의 간접세 과세제도의 개요

본 장에서는 제3장 이후의 실증분석의 대상인 우리나라의 간접세 과세제도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조세개요’를 중심으로 개관하기로 한다. 특히,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직접 관련되는 개별 세목(부가가치세, 주세, 교통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에 대하여 상설하기로 한다.

1. 부가가치세

본 절에서는 우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대하여 설명하였다⁶⁾. 그러나, 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한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으로는 부가가치세 부담수준 분석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론적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필요한 영세율과 면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가.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1) 과세대상

6)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중에서 후술하는 “영세율과 면세” 및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방법을 제외한 “과세기간과 신고납부”, “재화의 간주(의제)공급”,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및 “경정·징수와 환급”, “대리납부” 및 “납세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가) 재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① 유체물: 상품·제품·원료 등 재고자산, 기계·건물 등의 고정 자산 등 모든 유형적인 물건
- ② 무체물: 동력·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건

(나) 용역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재화·시설물·권리의 사용)로서 [표 2-1]의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용역으로 보는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근거로 한다.

[표 2-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에 해당하는 사업

① 건설업	② 숙박 및 음식점업
③ 운수업	④ 통신업
⑤ 금융 및 보험업	
⑥ 부동산업 ⁷⁾ 및 임대업(단,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임전임대업 제외)	⑦ 사업서비스업
⑧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⑨ 교육서비스업
⑩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⑪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⑫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⑬ 가사서비스업
⑭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7)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

(2) 과세거래

(가) 재화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① 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현금·외상·할부판매 등
 - ②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 ③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 ④ 기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경매⁸⁾·수용·현물출자 등
 - ⑤ 자가공급·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
 - ⑥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래
- 단, 아래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담보제공: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⁹⁾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 ② 사업의 양도: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 ③ 조세의 물납(상속세·증여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은 재화의 공급으로 분류한다.

- 8)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9)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일정기간 내에 변제하면 담보물의 소유권을 반환받는 담보

(나) 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역무의 제공,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① 무상공급
- ②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

(다) 재화의 수입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하는 것을¹⁰⁾ 재화의 수입으로 본다.

-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물품을 반입하는 것¹¹⁾
- 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3) 납세의무자

국내에서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로 본다(예: 개인(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법인, 수입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10) 보세구역에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

11) 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 포함

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방법

(1)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납세의무를 부과할 때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매출세액이 되는 거래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금액이다. 거래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다음 가액의 합계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¹²⁾.

- 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②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③ 폐업한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2)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이다.

(3)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공급가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12)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 “수입재화의 과세표준” 및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였다.

(4) 납부세액

$$\text{납부세액} = \text{매출세액} - \text{매입세액}$$

위 식에서 “매출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10%”으로 하고,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세액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으로 한다¹³⁾.

(5) 간이과세

일반과세자에 대한 이상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의 특례를 적용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간소화하고 있다.

(가) 간이과세자

직전 1억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액을 포함)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¹⁴⁾.

13) 보다 구체적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였다.

14)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더라도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 변호사 등 전문인적용역,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지역은 간이과세에서 제외된다.

(나) 과세표준과 세액

$$\text{납부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업종별 부가가치율} \times \text{세율}(10\%)$$

위 식에서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이고,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20%-40%이다¹⁵⁾. 간이과세자는 이상의 납부세액에서 매입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에 해당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하면 [표 2-3]과 같다.

15)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표 2-2]와 같다.

[표 2-2]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소매업은 2011년 거래분까지 15%)	20%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음식·숙박업은 2011년 거래분까지 30%)	40%

[표 2-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	직전연도 1억원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공급가액	공급대가
세율	10%, 0%(영세율)	업종별 부가가치율×10%, 0%(영세율)
거래징수	의무 있음	별도규정 없음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능하고 영수증 교부만 가능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과세표준(공급대가)×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10%
매입세금계산서 등	매입세액으로 공제	매입세액에 해당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납부의무면제	적용대상 아님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다. 부가가치세 이론의 적용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이상의 개관은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인 점을 고려하면 이상의 개관은 이후의 실증분석에 직접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성격과 과세방법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후의 실증분석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소비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value added)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여기서 ‘부가가치’는 각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새롭게 창출한 가치의 증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GNP형·소득형·소비형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모든 나라에서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다(최명근과 나성길, 2007).

소비형 부가가치세에서는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부가가치를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가치에서 자본재구입액을 공제한 것으로 파악하는데, 동(同)부가가치는 총소비액과 일치하고 생산요소들에게 분배되는 임금·지대·이자·이윤의 합계액에서 순투자액을 차감한 금액과 동일하다.

소비형 부가가치세에서 국민경제 전체의 부가가치 = 총소비액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이러한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그 특성상 모든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되 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다단계 일반소비세라고 할 수 있다. 즉, 법률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그 세액은 이후의 거래단계로 전가되어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되고 결국 경제적 관점에서의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인 것이다.

(2) 전단계세액공제법

소비형 부가가치세에서도 부가가치를 계산해서 과세하는 방법은 크게 전단계거래액공제법과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전단계세액공제법(invoice method)을 채택하고 있다.

전단계세액공제법에서는 사업자의 매출액에 세율을 곱해서 매출세액을 계산한 후에 매입액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된 매입세액(전단계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공급가액에 세율(10%)를 곱해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데 이를 통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게 된다. 즉, 이러한 거래징수를 통한 전가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데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공급가액×10%)이 바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이지만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즉, 납세의무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공급가액×10%’(판매가격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하지만¹⁶⁾ 과세기간별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에

16) [표 2-3]과 같이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거래징수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면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도 간이과세자는 발급하지 않는다.)

는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로 계산한 매출세액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와 매출세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또는 간이과세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구매가격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되는 것을 고려하면 결국 최종 소비지출액의 110분의 10이 개별 경제주체의 부가가치세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3) 영세율과 면세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서는 거래징수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연쇄적으로 전가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되지만 특정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과 면세가 적용되어 부가가치세의 귀착도 달라지게 된다.

(가) 영세율

영세율은 일정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매출세액이 ‘0’이 되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않고, 해당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과 관련해서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전단계에서 거래징수당

거래상대방이 부담하는 구매가격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와 거래하는 경우와 동일한 것이다.

한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된다. 따라서, 최종 소비지출액이 영세율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이라면 해당 재화나 용역과 관련해서 국민경제 전체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0’이 되고 부가가치세 부담 귀착의 분석필요성도 없게 된다.

(나) 면세

면세는 일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매출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생산·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도 환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판매가격에 포함시켜서 공급받는 자에게 전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면세의 전단계에서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면세재화나 용역의 판매가격에 잔존하게 되어 영세율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종 소비단계에서 이상의 분석과 같이 사업자가 암묵적으로 전가시킨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부담하더라도 판매가격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영세율과 마찬가지로 ‘0’이 된다. 따라서, 최종 소비지출액을 이용해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는 면세재화나 용역의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후의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¹⁷⁾.

17) 이러한 가정은 면세재화나 용역의 판매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이상의 이론적 분석과는 다른 것이지만 개별 재화나 용역의 거래단계별 과세·면세 여부 및 거래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국내의 모든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가 없는 실증분석의 제약 하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영세율과 면세

이상의 설명과 같이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과 구분해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분석해야 하는 영세율과 면세의 대상을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¹⁸⁾.

(1) 영세율의 적용대상¹⁹⁾

- ① 수출하는 재화: 우리 나라 선박에 의해 채포된 수산물의 외국 반출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증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 포함
- 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건설용역 등
- ③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④ 기타 외화획득사업
- ⑤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 ⑥ 외국인관광객 및 외국사업자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이상과 같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와 용역은 국외거래를 중심

18) 이하의 영세율과 면세의 적용대상은 현행 부가가치세법령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현재의 적용대상과 본 연구의 실증분석 기간(2006년-2009년) 동안의 적용대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의 실증분석 자료에서 특별히 기간별로 구분해야 하는 항목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한다. 아래의 세목에서도 실증분석 자료에서 기간별로 세법개정 사항을 반영해야 할 경우에는 본문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별도의 설명을 생략한다.

19)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원칙이지만,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게 동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도 적용된다.

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사용한 최종소비단계의 가계동향자료에서는 위 재화와 용역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영세율 거래를 별도로 구분하여 적용하지 않고 이후의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2) 면세의 적용대상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비교적 넓은 범위의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세부담을 면제시키고 있다.

- ① 기초생활 필수 재화 및 용역: 미가공식료품과 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 여객운송용역(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고속철도는 제외)
- ② 국민후생을 위한 재화 및 용역: 의료보건용역·교육용역
- ③ 문화 관련 재화 및 용역: 문화 관련 재화(도서·신문·잡지 등), 예술창작품, 문화행사, 비직업운동경기, 도서관·박물관·동물원 등의 입장
- ④ 생산요소 관련 재화 및 용역: 토지·금융용역
- ⑤ 인적용역: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연예인·작곡가 등)
- ⑥ 과세 주체의 공공성에 따른 면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 정부업무 대행단체 등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²⁰⁾

20) 2007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

- ⑦ 과세 객체의 용도에 따른 면세: 국민주택과 동 건설용역, 특수 용도 유류(농기계, 연근해 어업용선박, 연안여객선, 낙도 자가발전 용), 공장, 광산, 건설사업장 및 초·중·고등학교 구내식당 음식 용역 등
- ⑧ 면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수입²¹⁾

2. 주세

가. 과세대상 및 세율

주세의 과세대상인 “주류”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의미하는데 주류의 종류에 따른 세율은 [표 2-4]와 같다.

업, 음식·숙박업, 골프장, 스키장운영업, 기타운동시설 운영업은 과세로 전환되었다.

- 21) 이와 함께 면세되는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표 2-4] 주류의 종류에 따른 주세의 세율²²⁾

주류의 종류		주세율 ²³⁾
주정 ²⁴⁾		57,000원/ <i>kl</i> ²⁵⁾
발효주	탁주	5%
	약주·청주·과실주	30%
	맥주	72%
증류주(증류식소주·희석식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 ²⁶⁾)		72%
기타주류		
발효방법에 의한 제성주류로서 발효주가 아닌 것		72%
발효에 의하여 숙성한 주류로서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이외의 것		30%

주세는 대부분 종가세 방식이기 때문에 출고가격에 [표 2-4]의 주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주세액을 계산하는데²⁷⁾, 주세액에는 다시 [표 2-5]의 교육세가 부가세(surtax)로 부과된다.

22) [표 2-4]에도 불구하고 수출하는 주류, 국내주둔 외국군대 또는 외국주둔 국군에 납품하는 주류 등에는 주세가 면제된다.

23) 소규모 전통주에 대해서는 [표 2-4]의 각 주종별 세율의 50%를 적용한다.

24) 85도 이상

25) 단, 알콜분이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1도마다 600원씩 가산

26) 불휘발분 2도 이상

27) 종량세 방식인 주정의 경우에는 출고량에 주세율을 곱해서 주세액을 계산한다.

[표 2-5] 주세액에 대한 교육세율

주류의 종류	교육세율
주세율 70% 초과 주류	30%
주세율 70% 이하의 주류(단, 주정·탁주·약주는 과세제외)	10%

나. 세후가격의 분석 및 실증분석을 위한 가정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이다²⁸⁾. 그러나, 주세도 부가가치세와 같이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이기 때문에 주세 부담이 연쇄적으로 전가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된다.

최종소비자에 대한 주류의 판매가격은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begin{aligned} & \text{최종소비자에 대한 주류의 판매가격} \\ & = \{(\text{출고가격} + \text{주세액} + \text{교육세액}) + \text{유통단계의 이윤}\} \times (1 + \text{부가가치세율}(10\%)) \\ & = [\text{출고가격} \times \{1 + \text{주세율} \times (1 + \text{교육세율})\} + \text{유통단계의 이윤}] \times (1 + 10\%) \end{aligned}$$

위 식에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정확한 주세 및 그 부가세인 교육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출고 이후 유통단계의 이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국내의 모든 주류 거래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가 필요하지만 부가가치세에 대한 분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료가 없는 실증분석의 제약 하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가정이 필요하게

28)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고 이후 유통단계의 이윤을 ‘0’으로 가정하고 이후의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3. 개별소비세

가. 과세대상 및 세율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표 2-6]의 세율로 부과한다.

[표 2-6]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²⁹⁾

과세대상	세율
제1호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수렵용 총포류	20%
녹용·로얄젤리·향수	7%
제2호	
보석·귀금속제품·고급사진기·고급시계·고급 모피·고급용단·고급가구	20% ³⁰⁾
제3호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캠핑용자동차	10%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1,000cc 이하 경차는 과 세제외), 이륜자동차	5%
제4호	
등유·중유	90원/l·17원/l
프로판(LPG)·부탄(LPG)	20원/kg·252원/kg
천연가스(LNG)·부생연료유	60원/kg·66원/l
제5호	
전기냉방기·전기냉장고·전기세탁기·텔레비전 수상기	5% ³¹⁾
과세장소	
경마장·투전기장	500원·10,000원
회원제 골프장·폐광지역 카지노	12,000원·3,500원
기타 카지노 ³²⁾ ·경륜장 및 경정장	50,000원·200원
과세유흥장소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주점 및 기타 이와 유 사한 장소	10%

29) [표 2-6]에도 불구하고 자기(법인 제외)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등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30) 제2호 품목의 세율은 기준금액(200만원, 고급가구는 개당 500만원 또는

[표 2-6]의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은 다시 경기조절, 가격안정 및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조달에 필요한 경우에는 상하 3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기간(2006년-2009년) 동안 개별소비세율이 변동했거나 [표 2-6]의 현행세율과 다른 과세대상들을 기간별로 정리하면 [표 2-7]과 같다.

[표 2-7] 실증분석 기간(2006년-2009년) 동안의 개별소비세율의 변동

과세대상	'06.1	'06.7	'07.7	'08.1	'08.4	'08.12.19	'09.1	'09.7
	- '06.6	- '07.6	- '07.12	- '08.3	- '08.12.18	- '08.12.31	- '09.6	- '09.12
2,000cc 초과 승용차 등	10%	10%	10%	10%	10%	7%	7%	10%
2,000cc 이하 승용차 등 ³³⁾	5%	5%	5%	5%	5%	3.5%	3.5%	5%
등유	134원	134원	134원	63원	90원	90원	90원	90원
중유	15원	17원	17원	17원	17원	17원	17원	17원
프로판	40원	40원	40원	28원	20원	20원	20원	20원
부탄	306원	306원	275원	252원	252원	252원	275원	275원
천연가스	60원	60원	60원	42원	60원	60원	60원	60원
부생연료유	103원	103원	103원	47원	66원	66원	66원	66원
전기냉방기등	-	-	-	-	-	-	-	- ³⁴⁾
경정장	-	-	-	200원	200원	200원	200원	200원

* 굵은 글씨는 탄력세율임.

조당 8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 31) 제5호 품목은 월간소비전력량이 일정기준 이상인 제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 32) 모든 카지노에 대하여 외국인은 과세가 면제된다.
- 33) 2007년까지는 800cc 이하의 경차가 과세제외였지만, 2008년부터는 1,000cc 이하의 경차가 과세제외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사용한 가계동향자료는 연간자료이기 때문에³⁵⁾ [표 2-7]에서 연도중에 세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간별로 안분 계산한 연도별 평균세율을 적용하였다.

개별소비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된 과세표준에³⁶⁾ [표 2-6]의 개별소비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개별소비세액에는 다시 [표 2-9]의 교육세와 [표 2-1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surtax)로 과세된다.

[표 2-9] 개별소비세액에 대한 교육세율

과세대상	교육세율
등유·중유·수송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15%
그 밖의 개별소비세액	30%

34) 2010년부터 과세대상이다.

35)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가계동향자료의 조사주기는 매월이지만 월별자료에 서는 개별 소비지출액이 '0'인 항목들이 너무 많아서 본 연구의 소득계 층구분에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증분석에서는 연간 단위로 합산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36)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별 과세표준은 [표 2-8]과 같다.

[표 2-8]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과세대상	과세표준
판매장 과세물품	판매가격-기준가격
제조장 과세물품	사진기·시계·모피 등: 반출가격-기준가격 석유류: 반출가격
수입 과세물품	관세과세가격(CIF)+관세상당액
과세장소	인원
과세유흥장소	요금

[표 2-10] 개별소비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율

과세대상	농어촌특별세율
고급가구·모피·오락기 등 사치성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10%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30%

나. 세후가격의 분석 및 실증분석을 위한 가정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개별소비세도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이기 때문에 개별소비세세 부담이 연쇄적으로 전가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되는 점은 부가가치세나 주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최종소비자에 대한 과세대상 물품의 판매가격은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begin{aligned}
 & \text{최종소비자에 대한 과세대상 물품의 판매가격} \\
 & = \{(\text{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 + \text{개별소비세액} + \text{교육세액} + \text{농어촌특별세액}) + \text{유통단계의 이윤}\} \times (1 + \text{부가가치세율}(10\%)) \\
 & = [\text{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 \times \{1 + \text{개별소비세율} \times (1 + \text{교육세율} + \text{농어촌특별세율})\} + \text{유통단계의 이윤}] \times (1 + 10\%)
 \end{aligned}$$

위 식에서도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정확한 개별소비세액 및 그 부가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개별소비세 부과 이후 유통단계의 이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지만 부가가치세 및 주세에 대한 분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료가 없는 실증분석의 제약 하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가정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고 이후 유통단계의 이윤을 ‘0’으로 가정하고 이후의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종가세 방식이 아닌 종량세 방식의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위 식의 분석을 직접 적용할 수 없고 물량단위별 가격자료가 필요한데 실증분석의 분석항목에서 개별적인 가격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검색하여 이용하였다.

4. 교통세

가. 과세대상 및 세율

교통·에너지·환경세(전술한 바와 같이 편의상 “교통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하여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실증분석 기간(2006년-2009년) 이후의 세율의 변동을 정리하면 [표 2-11]과 같다. 교통세도 개별소비세와 같이 기본세율의 3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³⁷⁾ [표 2-11]의 세율도 모두 탄력세율에 해당한다.

[표 2-11] 실증분석 기간 이후의 교통세율의 변동

과세대상	‘05.7.8	‘06.6.30	‘07.7.23	‘08.3.10	‘09.1.1	‘09.5.21
	-‘06.6.29	-‘07.7.22	-‘08.3.9	-‘08.12.31	-‘09.5.20	이후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535원//	526원//	505원//	525원//	514원//	521원//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323원//	351원//	358원//	372원//	364원//	375원//

37)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의 경우와 같이 [표 2-11]에서 연도중에 교통세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간별로 안분계산한 연도별 평균세율을 실증분석에 적용하였다.

교통세액에는 다시 15%의 교육세와 27%의 주행세가 부가세(surtax)로 과세된다³⁸⁾.

나. 세후가격의 분석 및 실증분석을 위한 가정

교통세의 납세의무자는 유류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지만³⁹⁾, 교통세도 다른 간접세들과 같이 교통세 부담이 연쇄적으로 전가되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최종소비자에 대한 유류의 판매가격은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begin{aligned}
 & \text{최종소비자에 대한 유류의 판매가격} \\
 & = \{(\text{출고가격} + \text{교통세액} + \text{교육세액} + \text{주행세액}) + \text{유통단계의 이윤}\} \times (1 + \text{부가가치세율}(10\%)) \\
 & = [\text{출고가격} \times \{1 + \text{교통세율} \times (1 + \text{교육세율} + \text{주행세율})\} + \text{유통단계의 이윤}] \times (1 + 10\%)
 \end{aligned}$$

위 식에서도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정확한 교통세액 및 그 부가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교통세 부과 이후 유통단계의 이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지만 다른 간접세에 대한 분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8) 주행세는 다음 절의 세후가격의 분석에서는 고려해야 하지만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실증분석의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39) 유류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와 유류를 수입하는 자도 납세의무자이다.

가지로 이러한 자료가 없는 실증분석의 제약 하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가정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고 이후 유통단계의 이윤을 '0'으로 가정하고 이후의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통세는 위 분석을 직접 적용할 수 없는 종량세 방식이기 때문에 실증분석의 분석항목에서 유류가격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검색하여 이용하였다.

Ⅲ. 연구설계

이번 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우리나라의 간접세 과세제도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 소득계층별 실질부담을 분석하는데 이용한 실증분석 대상자료를 설명하고 이론적인 가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실증분석 대상자료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개별 경제주체의 최종 소비지출액을 이용해서 간접세 부담을 측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비지출 항목을 세분해서 측정하는 미시자료가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데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가계동향조사 자료(전술한 바와 같이 편의상 “가계동향자료”)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⁴⁰⁾. 가계동향자료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가계동향자료의 개요

가계동향조사는 연도별로 전국에서 10,000개 이상의⁴¹⁾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에서 가계부를 직접 기입하는 방법으로 가구당 월평균

40) 가계동향자료와 함께 개별 경제주체의 최종 소비지출액을 수집한 자료로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가 있지만 조사대상연도가 최근 2개연도(2008년 및 2009년)이고, 매년 5,000개 정도의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일부 소비지출 항목들(2008년에는 50개 정도)만을 조사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았다.

41) 본 연구의 실증분석 기간(2006년-2009년)에는 각각 12,304개, 11,040개, 11,012개 및 10,811개

소득 및 지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또한, 분석을 위한 각종 가구의 특성은 가구주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1) 조사목적

가계동향자료의 조사목적은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⁴²⁾.

(2) 조사대상

- ① 대상객체: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단, 농림어가, 외국인가구, 비혈연가구 및 기타 겸업가구 등 가구의 소득과 지출 파악이 곤란한 가구는 제외)
- ② 조사범위: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 ③ 조사단위: 가구
- ④ 조사지역: 전국(동 지역 및 읍면 지역)

(3) 조사방법

가구의 실태에 관한 사항은 면접조사원 기입식, 가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가계부 자기기입식⁴³⁾

42) 구체적으로는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산정 기초자료”, “각종 경제 및 사회정책입안 기초자료”, “소득분배지표 작성”, “국민계정 등 총량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주거이전비 산정, 취약계층 지원, 근로자 임금기준의 결정 등 기준제공”이다.

(4) 표본설계

- ① 모집단: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아파트조사구와 보통조사구내 가구 및 가구원을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으로 설정한 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에 신축아파트조사구(2005.11-2006.10)를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27,011개 조사구를 표본틀(sampling frame)로 사용
- ② 층화(stratification): 층간 독립적 추정이 가능한 7대도시(특·광역시)와 9개 도의 동부 및 읍·면·부로 전국을 25개로 층화
- ③ 표본추출법: ‘기초자료의 집계→특성항목의 선정→표본조사구 명부 작성→표본조사구 추출→표본조사구내 구역설정 및 표본가구 선정→표본조사구 번호 부여’의 순서로 진행⁴⁴⁾

(5) 표본규모

999개 조사구에서 약 10,000가구 (부적격가구 제외)⁴⁵⁾

- 43)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2인 이상 가구에 대한 조사와 함께 1인가구에 대한 조사가 2006년부터 실시되었기 본 연구의 실증분석 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이다.
- 44) 자세한 내용은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 45) 연동표본을 위해 9배수 규모와 지역별 최소조사구 50개를 유지하면서 기존 추정값의 상대표준오차(CV, coefficient of variation)를 고려하여 표본규모를 결정한다. 안정적인 시계열을 볼 수 있는 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 항목에 대한 목표CV를 서울과 경기도는 3% 내외, 광역시는 5% 내외, 각 도는 7% 내외로 설정하여 산정한 것이다.

나. 가계동향자료의 조사항목

가계동향조사는 아래와 같이 소분류 단계에서는 392개의⁴⁶⁾ 항목으로 세분하여 소비지출액을 조사하였다.

(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① 곡물

멥쌀, 찰쌀, 맥류, 두류, 기타곡물

② 곡물가공품

밀가루, 국수류, 라면류, 당면, 두부, 기타곡물가공품

③ 빵 및 떡류

케익, 식빵, 기타빵류, 떡

④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기타생육

⑤ 육류가공품

소시지, 햄 및 베이컨, 기타육류가공품

⑥ 신선수산물

갈치, 명태, 조기, 고등어, 꽁치, 오징어, 가자미, 게, 굴, 조개류, 기타수산물

⑦ 염건수산물

복어, 굴비, 마른멸치, 마른오징어, 간고등어, 기타염건수산물

⑧ 기타수산물가공

어묵, 맛살, 수산물통조림, 젓갈, 기타수산물가공품

46) 본 연구의 실증분석 기간(2006년-2009년) 중에서 2008년 이전에는 388개

⑨ 유제품 및 알

우유, 분유, 치즈, 요구르트, 두유, 기타우유가공품, 알 및 알가공품

⑩ 유지류

참기름, 들기름, 기타식물성식용유, 버터, 기타유지류

⑪ 과일 및 과일가공품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감귤류, 참외, 수박, 딸기, 바나나, 기타과일, 과일가공품

⑫ 채소 및 채소가공품

배추, 상추, 시금치, 양배추, 미나리, 깻잎, 부추, 무, 당근, 감자, 고구마, 도라지, 콩나물, 버섯, 오이, 풋고추, 호박, 가지, 토마토, 파, 양파, 마늘, 기타채소, 채소가공품

⑬ 해조 및 해조가공품

김, 미역, 기타해조류

⑭ 당류 및 과자류

설탕, 잼·꿀·조청, 초콜릿, 사탕 및 젤리, 한식과자, 껌, 아이스크림, 기타과자

⑮ 조미식품

말린고추, 참깨 및 들깨, 생강,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카레, 식초, 케첩, 드레싱, 혼합조미료, 기타조미식품

⑯ 기타식품

죽 및 스프, 이유식, 김치, 반찬류, 즉석·동결식품, 기타미분류식품

⑰ 커피 및 차

커피, 차

⑱ 주스 및 기타음료

과일 및 야채주스, 생수, 기능성음료수, 기타음료수

(2) 주류 및 담배

① 주류

소주, 과일주, 맥주, 탁주, 증류주, 기타주류

② 담배

담배

(3) 의류 및 신발

① 직물 및 외의

직물, 남성용외의, 여성용외의, 남학생교복, 여학생교복, 와이셔츠, 남방셔츠, 블라우스, 티셔츠, 스웨터 및 조끼, 운동복, 아동용외의, 기타외의

② 내의

남자내의 및 잠옷, 여자내의 및 잠옷, 아동용내의

③ 기타의복

양말 및 스타킹, 모자, 넥타이, 실류, 기타의복관련품

④ 의복관련 서비스

의복수선료, 의복세탁료, 기타의복관련서비스

⑤ 신발

아동화, 구두, 운동화, 기타신발

⑥ 신발서비스

신발관련서비스

(4) 주거 및 수도광열

① 주거비

월세, 기타의제주거비

② 주택유지 및 수선

벽지, 바닥재, 기타 주택유지 및 수선재, 설비·수리서비스, 세놓는 주택 수선

③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상하수도료, 쓰레기처리

④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공동주택관리비, 기타주거서비스

⑤ 연료비

전기료, 도시가스, LPG연료, 등유, 경유연료, 연탄, 공동주택난방비, 기타연료비

(5)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① 가구 및 조명

장롱, 화장대, 침대, 장식장, 소파, 책상, 의자, 식탁 및 식탁의자, 밥상, 조명기구, 기타가구, 중고가구

② 실내장식

카펫, 기타실내장식품

③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실내장식관련서비스

④ 가정용 섬유

침구류, 수건, 커튼, 기타 가정용섬유, 가정용섬유 관련 서비스

⑤ 가전 및 가정용기기

전기밥솥, 가스·전자레인지,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 정수기, 에어컨 및 선풍기, 난로 및 온풍기, 공기청정기 및 가습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기타 가정용기기 및 가전, 중고가전 및 가정용기기

⑥ 가전관련 서비스

가정용기기및가전서비스

⑦ 주방용품

식기류, 컵 및 다기, 숟, 후라이팬, 냄비, 칼 및 수저류, 기타주방용품

⑧ 가정용공구 및 기타

가정용전동공구, 설비관련기구, 건전지, 기타 소형공구 및 가사용품

⑨ 가사소모품

세탁용세제, 세탁·청소용구, 전구, 주방 및 청소용세제, 살충약품 및 용품, 기타가사소모품

⑩ 가사서비스

식품관련서비스, 가사사용인급료, 기타가사서비스

(6) 보건

① 의약품

조제양약, 판매양약, 한약 및 한약재, 인삼, 영양보조제

② 의료용 소모품

보건의료소모품

③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안경 및 콘택트, 기타보건의료기구

④ 외래의료서비스

일반병의원외래비, 한방병원외래비

⑤ 치과서비스

치과외래비

⑥ 기타의료서비스

기타보건의료서비스

⑦ 입원서비스

병원입원치료비

(7) 교통

① 자동차 구입

신차구입, 중고차구입

② 기타운송기구 구입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운송기구 유지 및 수리

부품 및 관련용품, 유지 및 수리비

④ 운송기구 연료비

휘발유, 경유, LPG, 기타연료

⑤ 기타 개인교통서비스

운전교습비, 주차료, 통행료, 기타개인교통

⑥ 철도운송

기차, 지하철

⑦ 육상운송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⑧ 기타운송

항공요금, 교통카드이용, 기타여객서비스

⑨ 기타 교통관련서비스

화물운송및보관

(8) 통신

① 우편서비스

우편서비스

② 통신장비

일반전화기기, 이동전화기기 등

③ 통신서비스

일반전화요금, 이동전화요금, 인터넷이용료, 기타통신관련비용

(9) 오락·문화

① 영상음향기기

텔레비전, 기타영상음향기기

② 사진광학장비

사진 및 광학장비

③ 정보처리장치

정보처리기기

- ④ 기록매체
기록용매체
- ⑤ 영상음향 및 정보기기 수리
영상 및 정보처리서비스
- ⑥ 오락문화 내구재
오락 및 운동내구재
- ⑦ 악기기구
악기
- ⑧ 오락문화내구재 유지 및 수리
오락문화내구재서비스
- ⑨ 장난감 및 취미용품
장난감
게임 및 취미용품
- ⑩ 캠핑 및 운동관련용품
등산납시사냥용품, 운동용품, 캠핑 및 운동용품 서비스
- ⑪ 화훼관련용품
원예용품
- ⑫ 애완동물관련 용품
애완동물관련품
- ⑬ 화훼 및 애완동물 서비스
애완동식물관련서비스
- ⑭ 운동 및 오락서비스
운동시설이용, 노래방이용, PC방이용, 기타오락시설이용, 운동경기
관람, 오락용품대여
- ⑮ 문화서비스

공연 및 극장, 관람시설이용, 독서실이용, 문화강습, 컨텐츠, 방송
수신료, 기타문화서비스

⑩ 복권

복권구입

⑪ 서적

유아용학습교재, 초등학생학습교재, 중고생교재, 중고생참고서, 기
타서적

⑫ 기타인쇄물

신문, 잡지, 기타인쇄물, 종이문구류, 필기 및 미술용품, 기타문구
류

⑬ 단체여행비

국내단체여행비, 해외여행비

(10) 교육

① 초등교육

유치원, 초등학교

② 중등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③ 고등교육

전문대학,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대학원

④ 학원 및 보습교육

입시 및 보습, 음악학원, 미술학원, 운동학원, 직업준비학원, 방문
학습지, 체험교육, 기타학원교육비, 개인과외비

⑤ 성인학원교육

성인직업학원, 외국어학원, 운동 및 교양교육

⑥ 기타교육

학교보충교육비, 평생교육원, 국내교육연수, 국외연수비

(11) 음식·숙박

① 식사비

일반식당, 배달음식, 이동식음식점, 단체제공식, 패스트푸드, 주점·커피숍

② 숙박비

호텔·여관·콘도, 기타숙박시설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① 이미용 서비스

목욕료, 이미용료, 기타이미용서비스

② 이미용 기기

이미용기기

③ 위생 및 이미용 용품

칫솔, 치약, 세면비누, 샴푸 및 린스, 화장지, 화장품, 기타이미용 용품

④ 시계 및 장신구

손목시계, 장식용시계, 장신구

⑤ 기타 개인용품

가방, 종교용품, 혼례 및 장·제례용품, 기타개인용품, 개인용품서비스

⑥ 사회복지

산후조리원, 보육료, 기타사회복지

⑦ 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 연금보험, 운송관련보험 등

⑧ 기타금융

금융수수료

⑨ 기타서비스

자가관련부동산수수료, 기타부동산수수료, 일반수수료, 응시료, 혼례 및 장·제례비, 기타서비스, 유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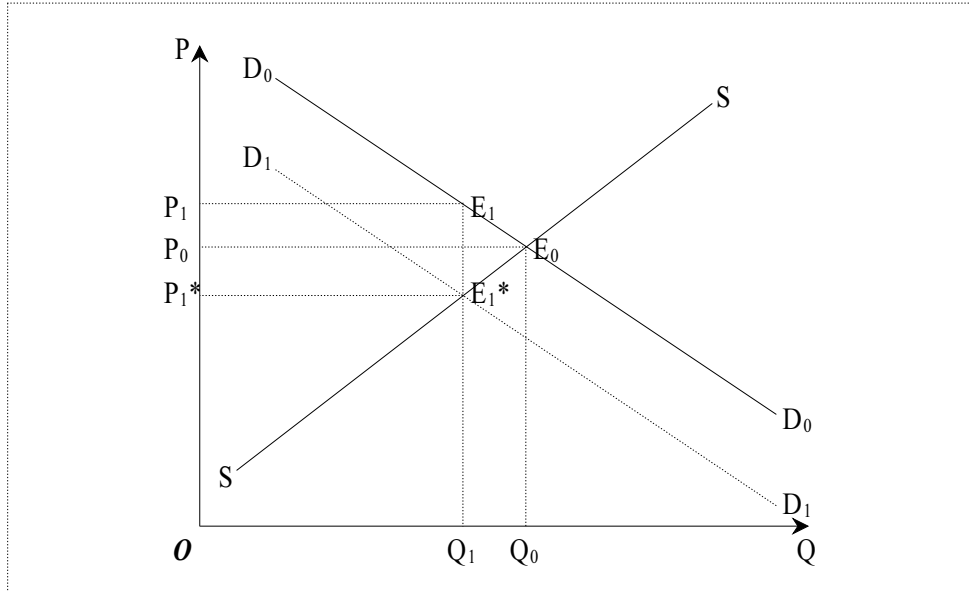
2. 실증분석을 위한 이론적 가정

이번 절에서는 이준구(1995)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물품세(excise tax)의 귀착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 장의 실증분석에 필요한 이론적인 가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물품세 귀착의 분석

독점이 아닌 일반적인 시장의 형태에서 물품세가 부과될 경우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부담의 귀착을 [그림 3-1]을 이용해서 분석하기로 한다.

[그림 3-1] 물품세 부담의 귀착의 분석



[그림 3-1]에서 물품세가 부과되기 전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각각 우하향하는 D_0D_0 와 우상향하는 SS 라고 하면 시장의 균형점은 E_0 에서 결정되고 균형가격과 균형판매량은 각각 P_0 와 Q_0 가 된다.

여기서 물품세가 과세되면 소비자가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담세자)가 되는 상황에서는 수요의 감소로 인해 수요곡선이 D_1D_1 으로 이동하게 되는데⁴⁷⁾ 이 때 시장의 균형점은 물품세의 존재로 인해 E_1^* 가 아닌 E_1 에서 결정된다. 즉,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해당 물품의 판매량은 Q_1 으로 감소하면서 가격은 P_1 으로 증가하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물품의 구입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P_0 에서 P_1 으로 증가하게 되는 반면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물품의 판매로 인한 수

47) 종량세의 경우에는 [그림 3-1]과 같이 수요곡선이 평행이동하고 증가세인 경우에는 가격에 비례해서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하의 이론적 분석의 결과는 동일하다.

입이 P_0 에서 P_1^* 로 감소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균형에서 과세되는 물품세 ($P_1 - P_1^*$) 중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각각 $(P_1 - P_0)$ 와 $(P_0 - P_1^*)$ 씩 각각 부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물품세의 부과로 인해 이들이 각각의 사각형 $P_1E_1E_0P_0$ 와 $P_0E_0E_1^*P_1^*$ 만큼씩 감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가적인 분석을⁴⁸⁾ 통해 물품세의 부과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부담은 아래와 같이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품세의 부과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 : 공급자의 부담
 = 공급의 가격탄력성 : 수요의 가격탄력성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새로운 가격에 대해 얼마나 신축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할 수 있는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위 결과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서 가지는 각각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이 물품세 부담의 귀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나.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가정

최종소비자의 소비지출액을 이용해서 간접세의 실질부담을 측정하는 본 연구에서 간접세의 부과로 인한 정확한 소비자의 부담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위 결과와 같이 개별 과세대상 항목별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48) 추가적인 분석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그러나, 가격탄력성 자료 역시 실증분석에서 이용할 수 없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물품세의 부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결국 위 결과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비해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큰 상황을 가정한 것인데 동(同)가정은 대부분의 시장에서 공급자가 갖는 협상력이 소비자에 비해 훨씬 큰 점을 감안하면 불완전하지만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V. 실증분석의 결과

1. 소득계층의 구분과 가구소득의 분석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하는 가계동향자료는 가구별로 소비지출금액은 조사한 것이다. 이 때 가구의 구성형태(즉, 가구주를 제외한 가구원의 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따라 소득계층을 구분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⁴⁹⁾.

가구 구성원은 물리적인 공간을 공유하면서 소비생활도 함께 하기 때문에 동일한 후생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필요경비적 성격의 소득은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가구원 수의 증가율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가구의 불평등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동등화지수(equivalence scale elasticity)를 사용한다. 동등화지수는 서로 다른 납세자의 증가소득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동등화지수를 계산할 때 몇 가지 방식이 사용되는데 첫째, 모든 가구원 수에 똑같은 비중을 부여하는 것, 둘째, 가계소득에 의존적인 아이들의 경우에 낮은 비중을 주는 것, 셋째, 규모의 경제를 가진 가구에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동등화지수의 선택에 따라 납세자의 소득규모는 다시 정렬된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조정된 소득 $Y^* = Y \div (A + aC)^b$ 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Y 는 가구소득이며, A 는 성인 수, C 는 미성년 수, a 는 미성년자 조정을 위한 계수, b 는 규모의 경제에 대한 계수이다⁵⁰⁾. 여기서 “규모의 경제”는 가구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재를 비례적으

49) 이하의 세 문단은 박기백과 김형준(2007)을 참고하였다.

50)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를 이용하여 계수를 추정하기도 한다.

로 많이 구입할 필요가 없는 특성을 의미하므로, 한 가구의 소득 혹은 지출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1인당 소득 혹은 지출을 비교하는 것은 왜곡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김우철 등, 2006)⁵¹⁾.

본 연구는 여러 가지 동등화지수의 선택 방법 중에서 박기백과 김형준(2007)과 같이 자녀 수는 고려하지 않고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는 계수는 0.5를 채택하였다(즉, $a=1$, $b=0.5$). 즉, $Y^* = Y \div N^{0.5}$ (N 은 가구원의 수) 으로 조정된 소득(이하 편의상 “조정소득”)을 계산했고, 조정소득의 크기에 따라 소득분위와 소득계층을 구분하였다⁵²⁾⁵³⁾.

- 51) 지수 b 가 나타내는 가구소비의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에 대하여 Nelson(1988)은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한 가구가 소비하는 재화 중 일부는 가구 구성원이 공통으로 소비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냉장고, TV 등). 둘째,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품목의 경우 가구는 생산측면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예컨대, 두 사람이 모여 요리를 하면 각각 요리를 할 경우에 비해 훨씬 빠른 시간과 적은 노력이 들기 때문에 식사준비가 훨씬 용이해지고, 그 결과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편의식품을 산다거나 외식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 금전적 이득을 누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가구원의 수가 많은 가구는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하게 되므로 할인혜택을 누릴 기회가 많고, 이를 통해 동일한 금액으로 더 많은 소비를 누릴 수 있으므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 52) OECD에서는 각국의 상황에 맞는 동등화지수가 필요하고 모든 목적에 공통으로 사용가능한 동등화지수는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아래와 같은 동등화지수가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이하의 내용은 www.oecd.org/social 에서 인용하였다.). 첫째, “OECD 동등화지수(old OECD scale 또는 Oxford scale)”는 첫 번째 가구원에게 1을 부여하고, 두 번째 가구원부터는 어른의 경우는 0.7을, 자녀의 경우는 0.5를 부여하는 것이다(OECD, 1982). 둘째, “OECD modified scale”은 첫 번째 가구원에게 1을 부여하고, 두 번째 가구원부터는 어른의 경우는 0.5를, 자녀의 경우는 0.3을 부여하는 것이다(Hagenaars et al.(1994))(즉, OECD 동등화지수와 OECD modified scale은 본문의 식에서 $b=1$ 로 두면서 a 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square root scale”은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계산되며 단순하고 편리한 장점 때문에 최근의 국제비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먼저 가계동향자료의 소득자료를 이용해서 연도별로 소득분위를 구분하면 [표 4-1]부터 [표 4-4]까지와 같다.

-
- 53) 앞선 각주의 대체적인 동등화지수의 적용방법(OECD 동등화지수 및 OECD modified scale)과 함께 $a=1$ 을 그대로 두면서 b 의 값을 0.5 대신 0.4와 0.6으로 변화시키는(즉, “square root scale”을 일부 변화시키는) 방법을 적용해서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하더라도 본 연구의 이후의 실증분석의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실증분석의 결과는 지면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표 4-1] 2006년의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총가구수	1,203	1,203	1,204	1,203	1,203	1,204
조정소득	503,144	1,274,894	1,967,350	2,799,146	3,800,385	5,003,052
가구원수	2.3	2.7	2.8	2.9	3.1	3.1
취업인원수	0.6	1.0	1.2	1.3	1.4	1.5
소득 ⁵⁴⁾	748,353	2,046,057	3,196,298	4,594,673	6,489,090	8,586,879
경상소득	682,396	1,930,572	3,016,738	4,352,720	6,154,943	8,134,854
근로소득	289,443	1,046,810	1,601,784	2,507,642	3,614,258	4,857,898
사업소득	112,691	422,187	738,369	944,279	1,469,795	2,082,457
재산소득	23,478	29,647	85,280	98,847	164,364	172,313
이전소득	3,930	8,222	13,296	25,091	24,978	39,044
비경상소득	65,956	115,485	179,561	241,952	334,146	452,025
구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총가구수	1,203	1,204	1,203	1,204	12,034	
조정소득	6,490,661	8,282,260	10,914,842	18,262,496	5,929,823	
가구원수	3.2	3.4	3.4	3.3	3.0	
취업인원수	1.6	1.6	1.8	1.8	1.4	
소득	11,336,501	14,915,241	19,828,868	32,341,112	10,408,307	
경상소득	10,826,951	14,178,975	18,752,409	29,936,875	9,796,743	
근로소득	6,606,385	8,883,532	12,803,296	21,879,308	6,409,036	
사업소득	2,892,582	3,746,106	4,159,258	5,479,958	2,204,768	
재산소득	208,254	234,996	319,925	777,818	211,492	
이전소득	56,285	47,462	60,260	144,696	42,326	
비경상소득	509,549	736,266	1,076,459	2,404,237	611,564	

54) [표 4-1]부터 [표 4-4]까지에서 소득 = 경상소득+비경상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표 4-2] 2007년의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총가구수	1,103	1,104	1,104	1,104	1,104	1,104
조정소득	1,070,897	2,700,125	4,398,112	6,322,133	8,627,325	11,313,078
가구원수	2.4	2.7	2.7	2.7	3.0	3.1
취업인원수	0.7	1.1	1.1	1.2	1.4	1.5
소득	1,616,737	4,254,964	7,011,202	10,130,094	14,525,978	19,606,019
경상소득	1,480,429	3,971,516	6,555,546	9,482,568	13,528,605	18,438,384
근로소득	692,785	2,110,734	3,649,841	5,018,383	7,774,384	10,679,149
사업소득	296,552	835,404	1,227,557	2,182,529	3,097,764	5,014,684
재산소득	38,431	77,033	153,086	279,613	304,368	404,252
이전소득	452,661	948,345	1,525,062	2,002,043	2,352,090	2,340,299
비경상소득	136,308	283,448	455,657	647,525	997,373	1,167,634
구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총가구수	1,104	1,104	1,104	1,105	11,040	
조정소득	14,495,625	18,304,476	23,780,016	38,906,734	12,991,852	
가구원수	3.2	3.3	3.4	3.2	3.0	
취업인원수	1.5	1.7	1.8	1.7	1.4	
소득	25,560,906	32,580,091	42,868,625	67,718,577	22,587,319	
경상소득	24,159,063	30,738,374	40,500,916	62,720,984	21,157,639	
근로소득	14,598,406	19,610,085	28,796,842	47,173,797	14,010,441	
사업소득	6,262,008	7,931,976	8,415,775	9,949,471	4,521,372	
재산소득	562,937	590,517	674,320	1,735,886	482,044	
이전소득	2,735,713	2,605,795	2,613,979	3,861,831	2,143,782	
비경상소득	1,401,843	1,841,718	2,367,710	4,997,593	1,429,6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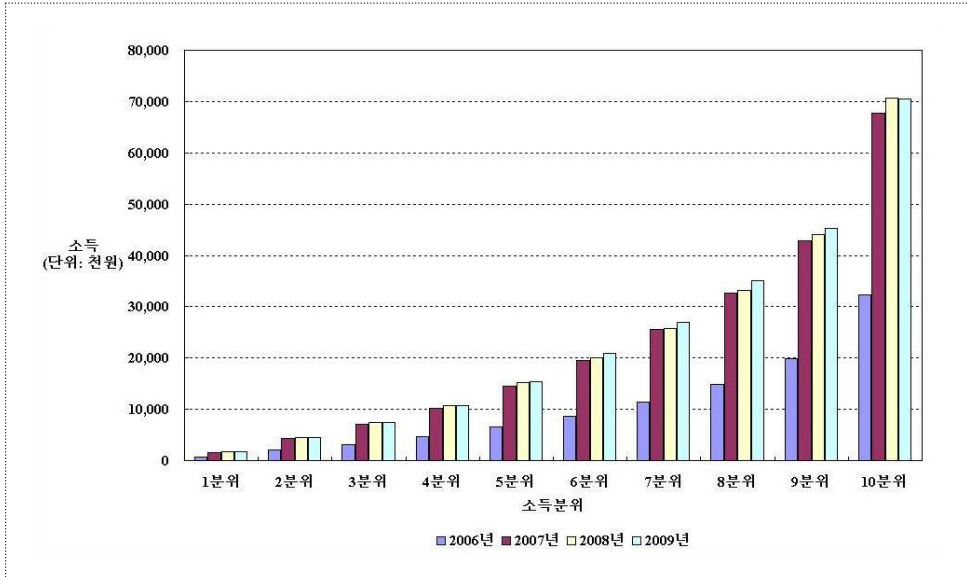
[표 4-3] 2008년의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총가구수	1,101	1,101	1,101	1,101	1,101	1,102
조정소득	1,123,197	2,876,540	4,614,264	6,643,902	9,032,408	11,679,888
가구원수	2.4	2.6	2.7	2.8	3.0	3.1
취업인원수	0.8	1.1	1.1	1.2	1.3	1.5
소득	1,730,428	4,500,870	7,400,258	10,784,240	15,124,053	20,022,525
경상소득	1,587,251	4,154,247	6,927,449	10,037,975	14,224,379	18,884,822
근로소득	741,623	2,097,320	3,700,104	5,431,905	7,769,396	11,300,718
사업소득	349,327	917,708	1,342,948	2,128,146	3,378,144	4,698,728
재산소득	36,416	63,212	143,792	220,586	327,609	381,264
이전소득	459,884	1,076,008	1,740,605	2,257,339	2,749,230	2,504,112
비경상소득	143,177	346,623	472,809	746,265	899,673	1,137,703
구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총가구수	1,101	1,101	1,101	1,102	11,012	
조정소득	14,779,276	18,683,822	24,523,754	40,031,777	13,398,883	
가구원수	3.2	3.3	3.3	3.2	3.0	
취업인원수	1.5	1.7	1.7	1.8	1.4	
소득	25,827,357	33,235,995	44,117,003	70,589,520	23,333,225	
경상소득	24,355,729	31,420,460	41,700,604	65,469,322	21,876,224	
근로소득	14,709,916	20,713,619	30,159,013	49,885,684	14,650,930	
사업소득	6,187,889	7,347,526	7,187,889	10,058,821	4,359,712	
재산소득	501,707	690,271	1,058,827	1,524,034	494,772	
이전소득	2,956,217	2,669,044	3,294,876	4,000,784	2,370,810	
비경상소득	1,471,629	1,815,535	2,416,398	5,120,198	1,457,001	

[표 4-4] 2009년의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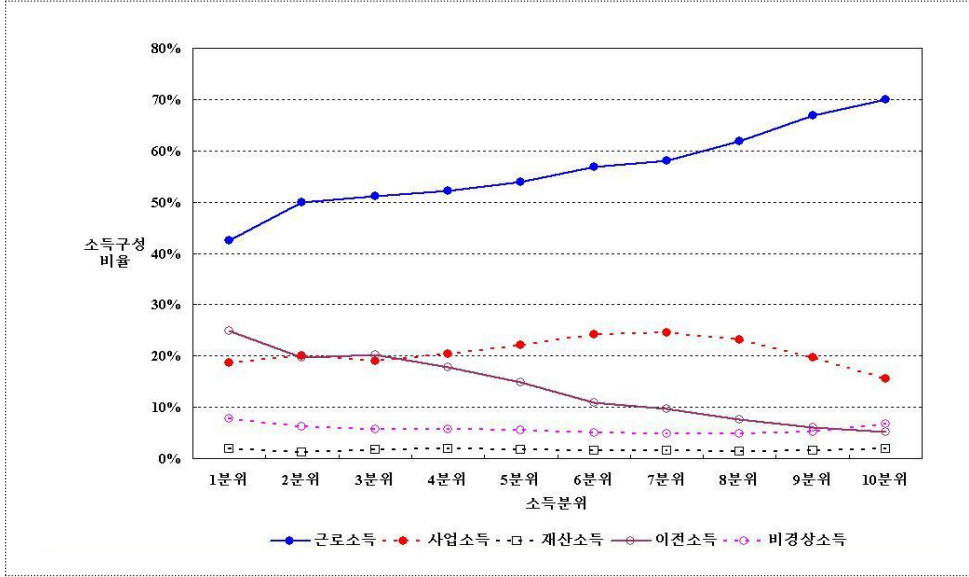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총가구수	1,088	1,088	1,088	1,088	1,088	1,088
조정소득	1,106,580	2,812,634	4,617,824	6,685,303	9,108,422	11,987,090
가구원수	2.3	2.7	2.7	2.7	3.0	3.2
취업인원수	0.8	1.1	1.2	1.3	1.4	1.6
소득	1,665,320	4,505,141	7,409,349	10,714,429	15,385,073	20,926,943
경상소득	1,567,507	4,299,298	7,084,623	10,269,752	14,727,495	20,187,081
근로소득	728,268	2,397,503	3,835,830	5,919,815	8,631,264	12,476,962
사업소득	313,345	894,374	1,434,629	2,111,397	3,463,118	4,951,488
재산소득	10,272	14,377	42,415	74,820	107,696	104,423
이전소득	515,621	993,044	1,771,749	2,163,720	2,525,417	2,654,207
비경상소득	97,813	205,843	324,726	444,677	657,577	739,862
구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총가구수	1,088	1,088	1,088	1,089	10,881	
조정소득	15,271,321	19,359,587	25,042,116	39,940,212	13,593,109	
가구원수	3.2	3.4	3.4	3.3	3.0	
취업인원수	1.7	1.7	1.9	1.9	1.5	
소득	26,917,009	35,105,867	45,193,163	70,493,205	23,831,550	
경상소득	25,933,720	33,820,343	43,238,170	66,743,351	22,787,134	
근로소득	16,171,525	22,422,390	29,762,501	49,650,533	15,199,659	
사업소득	6,697,818	7,831,836	10,078,004	12,204,108	4,998,012	
재산소득	107,815	150,753	252,882	385,727	125,118	
이전소득	2,956,562	3,415,364	3,144,784	4,502,983	2,464,345	
비경상소득	983,290	1,285,524	1,954,992	3,749,853	1,044,416	

[그림 4-1] 연도별 및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표 4-1]부터 [표 4-4]까지를 정리한 [그림 4-1]과 같이 가구소득은 소득분위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 소득분위별 소득구성 비율 (2006년-2009년 평균)



또한, [표 4-1]부터 [표 4-4]까지를 정리한 [그림 4-2]를 살펴보면 소득유형별 구성비율도 소득분위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하위 소득계층에 비해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근로소득의 비율이 높은 반면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이전지출은 하위 소득계층일수록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⁵⁵⁾.

제3절 이후의 분석은 이러한 소득계층간의 소득형성 단계에서의 경제적 불평등이 소비지출액에 대한 과세를 통해 더욱 강화되는지 또

55) 연도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2006년의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연도별 가구소득을 분석하더라도 [표 4-1]부터 [그림 4-2]까지의 실증분석의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구체적인 실증분석의 결과는 지면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이후의 분석대상들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는 완화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2. 가구소비지출액의 분석

다음으로 제3장에서 소개한 가계동향조사의 조사항목별 지출액이 소득계층간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단, 앞서 소개한 392개의 소분류 대신 대분류에 따라 분석했는데 그 결과는 [표 4-5]부터 [표 4-8]까지와 같다⁵⁶⁾⁵⁷⁾.

56) 단, [표 4-5]부터 [표 4-7]까지의(즉,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소비지출액의 대분류는 아래와 같다.

① 식료품	② 주거	③ 광열수도
④ 가구·집기·가사용품		⑤ 피복 및 신발
⑥ 보건의료	⑦ 교육	⑧ 교양오락
⑨ 교통통신	⑩ 기타소비지출	

57) [표 4-5]부터 [표 4-8]까지에서 가계지출 = 소비지출+비소비지출 = (①+...+⑩)+비소비지출

[표 4-5] 2006년의 소득분위별 가구소비지출액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가계지출	1,520,247	2,263,226	3,201,880	4,258,133	6,097,034	7,668,781
소비지출	1,363,754	2,059,787	2,834,914	3,758,680	5,377,331	6,738,022
①	364,207	569,602	784,913	1,057,793	1,465,682	1,837,784
②	99,810	123,412	148,142	191,068	244,588	287,828
③	116,333	154,168	214,550	253,321	332,203	388,983
④	48,688	93,218	109,322	141,581	239,186	282,494
⑤	58,827	88,344	130,356	172,415	263,652	318,417
⑥	84,149	124,828	190,231	241,391	301,850	383,973
⑦	100,817	207,250	258,557	358,270	547,214	692,927
⑧	48,193	87,070	106,481	142,825	227,934	270,931
⑨	214,914	312,381	452,005	594,686	925,589	1,166,707
⑩	227,816	299,514	440,357	605,329	829,434	1,107,978
비소비지출	156,493	203,440	366,966	499,454	719,703	930,759
구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가계지출	9,679,049	12,330,037	15,535,540	23,200,139	8,575,407	
소비지출	8,405,417	10,471,862	12,987,468	17,755,577	7,175,281	
①	2,253,112	2,785,545	3,273,604	4,010,032	1,840,227	
②	328,425	343,596	375,156	461,560	260,358	
③	456,921	533,696	593,647	666,209	371,003	
④	348,797	433,903	537,308	781,225	301,572	
⑤	423,273	536,357	713,879	1,062,902	376,842	
⑥	458,452	512,504	614,661	847,233	375,927	
⑦	930,621	1,218,053	1,475,824	1,880,847	767,038	
⑧	372,472	451,383	590,245	1,059,438	335,697	
⑨	1,486,880	1,841,152	2,445,348	3,417,011	1,285,667	
⑩	1,346,463	1,815,673	2,367,797	3,569,120	1,260,948	
비소비지출	1,273,632	1,858,175	2,548,072	5,444,562	1,400,126	

[표 4-6] 2007년의 소득분위별 가구소비지출액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가계지출	2,743,329	4,620,057	6,988,644	9,632,332	13,342,736	17,495,318
소비지출	2,476,847	4,139,164	6,262,401	8,554,566	11,742,628	15,400,238
①	694,207	1,135,966	1,732,488	2,359,326	3,187,876	4,136,960
②	168,524	253,948	374,473	427,970	532,115	688,775
③	203,288	288,932	425,249	548,822	673,167	856,290
④	91,996	203,207	258,938	357,412	511,534	638,504
⑤	95,634	173,731	245,299	398,276	519,575	722,775
⑥	188,124	297,769	412,478	594,314	735,796	806,339
⑦	159,921	293,260	563,201	775,327	1,236,454	1,702,589
⑧	93,997	158,214	252,024	348,636	484,263	607,166
⑨	394,816	665,645	1,001,930	1,368,316	1,942,924	2,728,560
⑩	386,340	668,493	996,320	1,376,166	1,918,924	2,512,281
비소비지출	266,482	480,893	726,243	1,077,766	1,600,108	2,095,080
구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가계지출	21,878,935	26,685,075	33,057,210	48,811,874	18,525,551	
소비지출	18,879,688	22,726,708	27,491,120	36,592,763	15,426,612	
①	4,919,062	5,850,243	6,797,651	8,165,456	3,897,924	
②	684,723	849,230	782,225	991,158	575,314	
③	990,718	1,071,759	1,185,671	1,309,259	755,315	
④	829,318	970,115	1,177,116	1,754,579	679,272	
⑤	905,099	1,170,867	1,482,643	2,154,666	786,857	
⑥	1,087,533	1,142,595	1,280,121	1,734,607	827,968	
⑦	2,216,398	2,608,095	3,165,636	3,831,140	1,655,202	
⑧	793,739	985,945	1,317,459	2,258,310	729,975	
⑨	3,308,690	4,064,918	5,149,193	6,587,282	2,721,227	
⑩	3,144,408	4,012,941	5,153,405	7,806,307	2,797,558	
비소비지출	2,999,247	3,958,367	5,566,090	12,219,111	3,098,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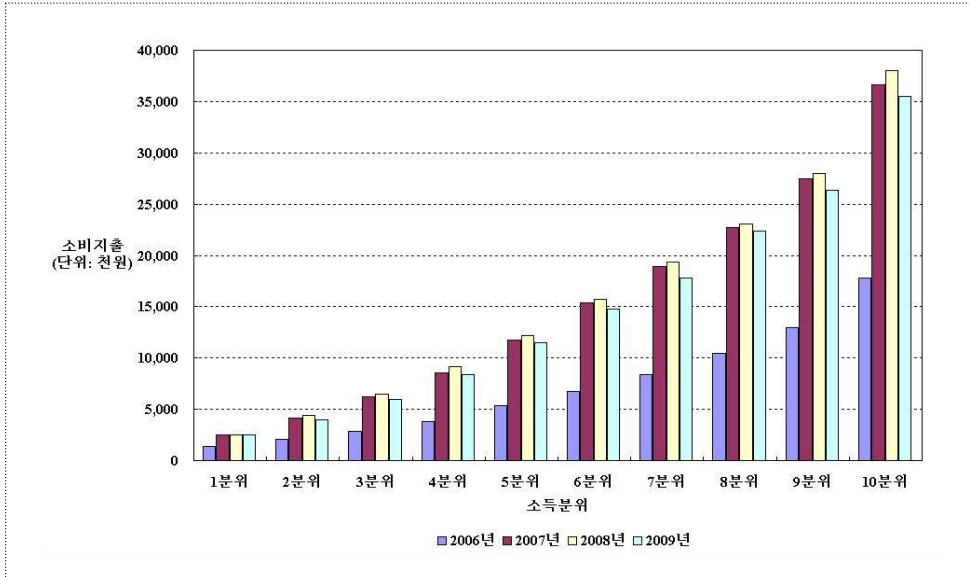
[표 4-7] 2008년의 소득분위별 가구소비지출액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가계지출	2,705,591	4,944,098	7,305,583	10,253,800	13,715,687	17,997,791
소비지출	2,475,957	4,441,630	6,495,439	9,129,270	12,175,741	15,711,926
①	701,027	1,246,357	1,836,024	2,512,030	3,352,740	4,183,655
②	136,911	250,806	333,162	484,408	539,960	717,065
③	205,990	340,291	455,755	583,023	766,513	862,733
④	92,652	194,439	283,937	389,769	497,873	693,419
⑤	104,809	194,240	276,940	400,175	533,799	721,714
⑥	191,653	296,456	444,872	611,718	737,083	853,804
⑦	177,251	375,158	535,088	920,952	1,319,603	1,727,652
⑧	92,852	165,287	249,424	365,166	477,131	611,291
⑨	385,809	673,607	1,021,173	1,405,417	1,968,834	2,680,677
⑩	387,003	704,990	1,059,063	1,456,612	1,982,205	2,659,914
비소비지출	229,634	502,468	810,144	1,124,530	1,539,946	2,285,865
구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가계지출	22,193,998	27,207,084	33,850,920	50,384,075	19,055,863	
소비지출	19,367,945	23,086,496	28,025,478	37,981,405	15,889,129	
①	5,069,153	5,948,900	7,040,844	8,581,905	4,047,264	
②	807,572	807,074	888,510	1,065,889	603,136	
③	1,007,995	1,116,909	1,244,803	1,396,452	798,046	
④	847,389	1,012,206	1,129,368	1,721,669	686,272	
⑤	956,752	1,109,946	1,493,377	2,217,466	800,922	
⑥	1,021,959	1,159,075	1,373,139	1,845,002	853,476	
⑦	2,147,380	2,638,924	3,320,897	4,143,312	1,730,622	
⑧	852,216	1,003,331	1,379,620	2,086,378	728,270	
⑨	3,278,947	4,342,403	4,991,137	6,699,730	2,744,773	
⑩	3,378,581	3,947,728	5,163,783	8,223,602	2,896,348	
비소비지출	2,826,053	4,120,588	5,825,442	12,402,670	3,166,734	

[표 4-8] 2009년의 소득분위별 가구소비지출액⁵⁸⁾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가계지출	3,024,833	4,766,249	7,158,211	10,150,514	13,937,663	18,335,372
소비지출	2,534,586	3,947,169	5,928,222	8,348,502	11,460,231	14,782,970
①	489,939	702,413	1,081,732	1,415,458	1,865,381	2,320,120
②	46,445	71,741	97,105	142,668	181,905	233,032
③	120,802	205,004	296,999	453,239	627,143	815,308
④	430,616	631,988	872,940	1,209,971	1,598,892	1,738,212
⑤	94,033	131,670	197,262	317,576	339,125	514,184
⑥	230,486	356,305	534,423	681,930	792,466	1,033,654
⑦	265,037	372,048	565,404	902,757	1,181,960	1,611,860
⑧	166,071	270,216	403,173	566,581	820,058	1,015,609
⑨	112,275	166,359	244,923	355,844	531,890	685,752
⑩	187,520	333,881	561,212	731,322	1,176,981	1,684,756
⑪	224,703	404,090	628,753	986,196	1,411,484	1,853,871
⑫	166,658	301,453	444,297	584,961	932,946	1,276,612
비소비지출	490,247	819,080	1,229,989	1,802,012	2,477,431	3,552,402
구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가계지출	22,426,387	28,490,575	34,510,562	50,003,083	19,280,345	
소비지출	17,828,405	22,339,919	26,326,154	35,527,313	14,902,347	
①	2,610,783	3,129,743	3,368,810	3,978,012	2,096,239	
②	259,342	291,452	320,458	325,092	196,924	
③	1,034,663	1,345,276	1,721,686	2,555,204	917,532	
④	1,917,200	2,133,390	2,413,854	2,792,274	1,573,934	
⑤	575,406	781,216	920,828	1,452,557	532,386	
⑥	1,202,444	1,366,584	1,614,081	2,252,197	1,006,457	
⑦	2,198,329	2,806,482	3,536,678	5,734,983	1,917,554	
⑧	1,196,444	1,426,606	1,569,677	1,743,786	917,822	
⑨	836,223	1,165,164	1,352,359	2,138,848	758,964	
⑩	2,068,366	2,891,952	3,478,602	4,468,294	1,758,289	
⑪	2,334,115	2,982,722	3,567,717	4,632,676	1,902,633	
⑫	1,595,089	2,019,332	2,461,403	3,453,390	1,323,614	
비소비지출	4,597,982	6,150,656	8,184,408	14,475,770	4,377,998	

[그림 4-3] 연도별 및 소득분위별 가구소비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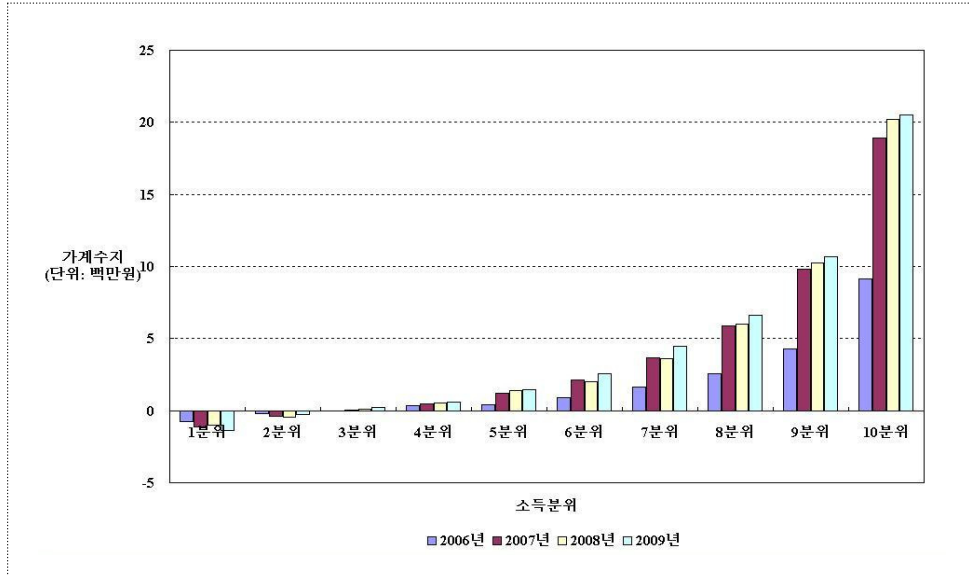


[표 4-5]부터 [표 4-8]까지를 정리한 [그림 4-3]과 같이 가구소비지출액도 소득분위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8) 단, [표 4-8]의(즉, 2009년의) 소비지출액의 대분류는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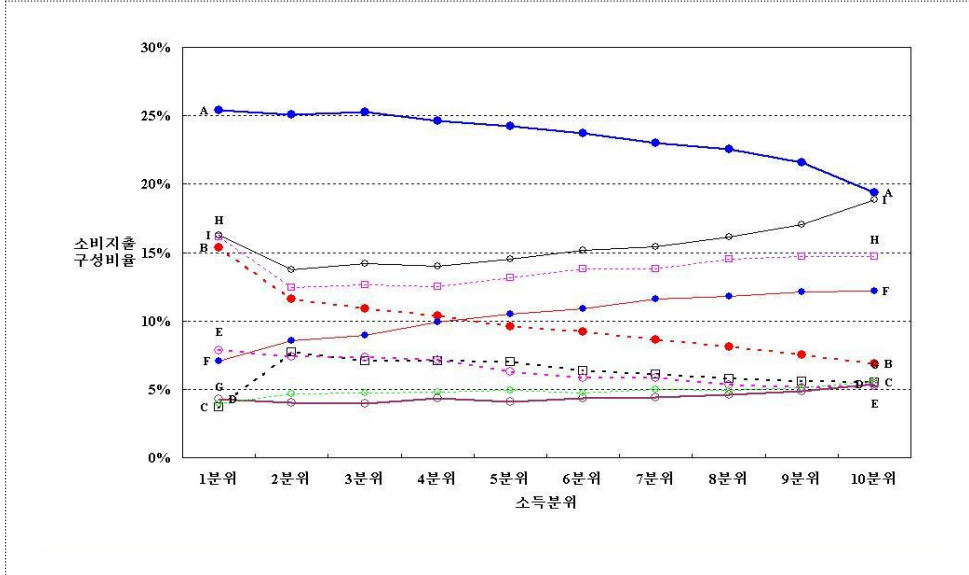
- | | |
|----------------|---------------|
| ①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 ② 주류 및 담배 |
| ③ 의류 및 신발 | ④ 주거 및 수도광열 |
| ⑤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 ⑥ 보건 |
| ⑦ 교통 | ⑧ 통신 |
| ⑨ 오락·문화 | ⑩ 교육 |
| ⑪ 음식·숙박 | ⑫ 기타 상품 및 서비스 |

[그림 4-4] 연도별 및 소득분위별 가계수지



또한, [그림 4-1]과 [그림 4-3]을 결합한 [그림 4-4]와 같이 가계수지(가계지출(소비지출+비소비지출)-소득)도 소득계층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하위 소득계층에서는 이전소득이나 비경상소득까지도 포함한 가구소득이 가계지출보다 낮아서 적자가계가 운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5]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구성비율 (2006년-2009년 평균)*



* 대분류 항목의 기간별 불일치 때문에 편의상 대분류를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함.

- | | | |
|---------------|--------------|---------|
| A. 식료품 | B. 주거 및 수도광열 | |
| C. 가구·집기·가사용품 | D. 피복 및 신발 | |
| E. 보건의료 | F. 교육 | G. 교양오락 |
| H. 교통통신 | I. 기타소비지출 | |

또한, [표 4-5]부터 [표 4-8]까지를 정리한 [그림 4-5]를 살펴보면 소비지출별 구성비율도 소득분위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필수적인 생계비용인 식료품이나 주거 및 수도광열 비용의 비율은 하위 소득계층일수록 높은 반면 사교육을 포함한 교육 비용은 높은 계층일수록 크게 증가해서 교육을 통한 “보이지 않는 증여”와 “사회적 계층의 대물림”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소비지출항목의 대분류 자료 대신 소분류 자료를 이용해서 소득계층간의 간접세 부담의 미시적 분석

을 실시한다.

3. 소득계층별 간접세 부담의 분석

이번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이론적 분석을 위한 가정들(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최종소비자에게는 전가를 통한 부담의 귀착이 발생하지 않고, 주세 등의 경우 출고 이후의 유통과정에서 가산되는 이익은 없으며, 모든 물품시장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비해 공급탄력성이 매우 크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개별 간접세 세목들과 전체 간접세를 통한 부담이 소득계층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다만, [그림 4-3]과 같이 소득계층간에 소비지출액의 절대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담하는 간접세 그 자체를 비교해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세가 가구소득이나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부담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가. 부가가치세

가계동향자료의 각각의 소분류 소비지출항목들을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로 구분하여 소비지출액(판매가격)에 각각 9.1%(110분의 10)과 0%의 세율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대분류 소비지출항목 단계에서부터 합산하면 연도별로 [표 4-9]부터 [표 4-1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9] 2006년의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부담 수준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①	18,512	30,778	41,885	56,798	82,021	103,870
②	4,160	5,325	6,399	8,311	10,974	12,426
③	9,254	12,261	17,020	19,939	26,257	30,377
④	4,426	8,474	9,938	12,871	21,744	25,681
⑤	5,348	8,031	11,851	15,674	23,968	28,947
⑥	1,179	2,492	3,500	4,292	5,458	5,900
⑦	1,248	3,458	4,280	6,473	9,735	13,515
⑧	3,734	6,607	7,959	10,849	17,484	21,078
⑨	15,720	23,319	34,233	44,742	71,304	90,412
⑩	19,207	24,466	36,481	49,954	67,609	90,158
부가가치세 합계	82,788	125,213	173,546	229,903	336,556	422,364
소득비율	11.06%	6.12%	5.43%	5.00%	5.19%	4.92%
소비지출액비율	6.07%	6.08%	6.12%	6.12%	6.26%	6.27%
구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①	131,864	164,910	198,551	248,497	107,769	
②	15,855	20,091	23,362	34,016	14,092	
③	35,736	41,402	46,335	51,820	29,040	
④	31,709	39,446	48,846	71,020	27,416	
⑤	38,479	48,760	64,898	96,627	34,258	
⑥	7,316	9,776	11,418	14,260	6,559	
⑦	19,065	25,859	31,442	47,083	16,216	
⑧	29,028	34,295	45,177	85,175	26,139	
⑨	114,789	144,990	194,239	277,775	101,152	
⑩	109,422	145,665	193,048	289,652	102,566	
부가가치세 합계	533,263	675,192	857,317	1,215,926	465,207	
소득비율	4.70%	4.53%	4.32%	3.76%	4.47%	
소비지출액비율	6.34%	6.45%	6.60%	6.85%	6.48%	

[표 4-10] 2007년의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부담 수준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①	34,794	59,722	89,782	125,498	175,159	230,780
②	7,228	9,638	15,724	20,260	24,453	32,392
③	16,161	23,010	33,504	43,145	52,058	65,969
④	8,363	18,473	23,540	32,492	46,503	58,046
⑤	8,694	15,794	22,300	36,207	47,234	65,707
⑥	2,668	4,470	6,513	8,858	10,773	13,270
⑦	2,648	4,664	9,586	13,759	22,277	31,450
⑧	7,053	12,156	19,598	27,112	38,127	47,781
⑨	29,422	49,873	75,192	102,636	146,974	209,992
⑩	31,228	54,687	78,375	110,864	153,377	199,839
부가가치세 합계	148,261	252,487	374,113	520,832	716,935	955,224
소득비율	9.17%	5.93%	5.34%	5.14%	4.94%	4.87%
소비지출액비율	5.99%	6.10%	5.97%	6.09%	6.11%	6.20%
구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①	284,081	350,342	417,984	510,742	227,888	
②	36,371	47,109	49,451	70,709	31,333	
③	76,669	82,701	91,620	101,214	58,605	
④	75,393	88,192	107,011	159,507	61,752	
⑤	82,282	106,442	134,786	195,879	71,532	
⑥	15,771	18,949	24,869	32,493	13,863	
⑦	41,649	50,360	64,459	87,279	32,813	
⑧	61,192	77,074	103,973	181,603	57,567	
⑨	257,329	316,987	405,719	526,894	212,102	
⑩	250,279	318,695	406,479	612,201	221,602	
부가가치세 합계	1,181,016	1,456,852	1,806,350	2,478,521	989,059	
소득비율	4.62%	4.47%	4.21%	3.66%	4.38%	
소비지출액비율	6.26%	6.41%	6.57%	6.77%	6.41%	

[표 4-11] 2008년의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부담 수준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①	35,366	63,595	95,161	134,157	180,849	236,263
②	4,818	9,029	13,913	20,908	24,608	32,716
③	16,530	27,145	35,994	45,643	59,656	67,102
④	8,423	17,676	25,812	35,434	45,261	63,038
⑤	9,528	17,658	25,176	36,380	48,527	65,610
⑥	2,490	4,694	6,092	8,354	11,891	13,117
⑦	2,891	6,594	9,470	14,485	22,686	31,449
⑧	7,008	12,994	19,042	28,227	36,732	47,397
⑨	28,405	49,407	76,657	105,112	148,964	205,208
⑩	30,745	55,738	84,261	113,956	153,539	208,381
부가가치세 합계	146,204	264,530	391,580	542,657	732,714	970,279
소득비율	8.45%	5.88%	5.29%	5.03%	4.84%	4.85%
소비지출액비율	5.90%	5.96%	6.03%	5.94%	6.02%	6.18%
구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①	293,463	354,684	425,763	538,510	235,781	
②	39,619	47,553	56,536	78,753	32,845	
③	78,496	86,584	96,335	108,218	62,170	
④	77,035	92,019	102,670	156,515	62,388	
⑤	86,977	100,904	135,762	201,588	72,811	
⑥	15,913	18,962	23,059	32,245	13,682	
⑦	41,462	46,261	69,703	87,218	33,222	
⑧	66,668	77,275	108,360	165,037	56,874	
⑨	254,341	342,088	394,690	534,773	213,964	
⑩	261,210	308,315	397,713	638,238	225,210	
부가가치세 합계	1,215,184	1,474,645	1,810,591	2,541,096	1,008,948	
소득비율	4.71%	4.44%	4.10%	3.60%	4.32%	
소비지출액비율	6.27%	6.39%	6.46%	6.69%	6.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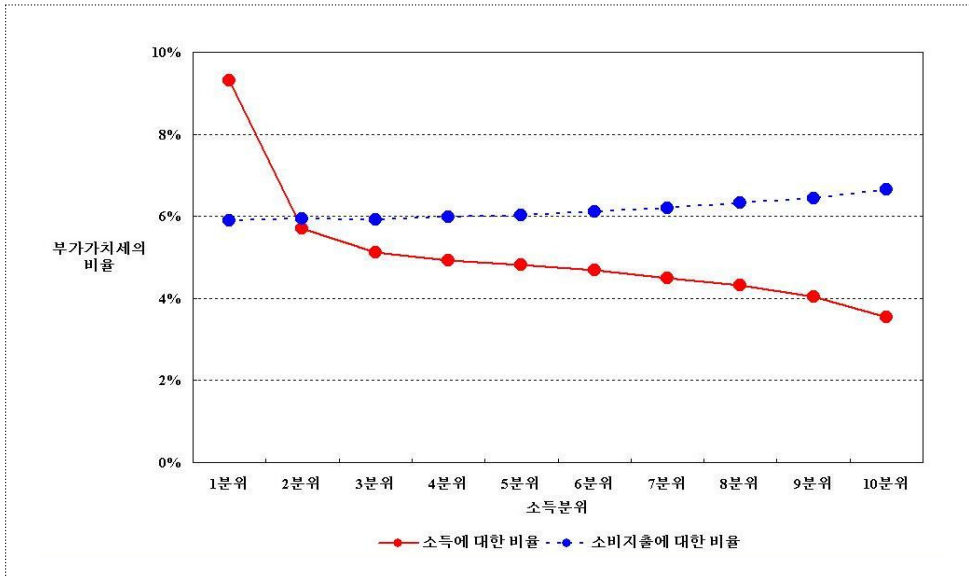
[표 4-12] 2009년의 소득분위별 부가가치세 부담 수준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①	14,999	22,560	33,589	46,456	65,451	83,622
②	4,222	6,522	8,828	12,970	16,537	21,185
③	10,982	18,637	27,000	41,204	57,013	74,119
④	25,614	35,977	51,399	67,617	85,878	101,894
⑤	8,548	11,970	17,933	28,871	30,830	46,744
⑥	2,985	4,806	7,755	10,744	12,160	16,446
⑦	19,556	26,934	40,129	68,101	87,801	124,350
⑧	15,083	24,529	36,614	51,454	74,472	92,236
⑨	7,762	11,114	15,902	23,453	35,096	44,976
⑩	523	1,356	1,952	3,185	5,536	7,383
⑪	20,428	36,735	57,159	89,654	128,317	168,534
⑫	11,545	20,306	29,305	37,733	61,415	81,723
부가가치세 합계	142,246	221,445	327,566	481,440	660,505	863,211
소득비율	8.54%	4.92%	4.42%	4.49%	4.29%	4.12%
소비지출액비율	5.61%	5.61%	5.53%	5.77%	5.76%	5.84%
구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①	97,197	118,546	126,750	148,893	75,806	
②	23,577	26,496	29,133	29,554	17,902	
③	94,060	122,298	156,517	232,291	83,412	
④	112,943	140,466	161,019	187,111	96,992	
⑤	52,310	71,020	83,712	132,051	48,399	
⑥	18,455	22,380	29,598	43,281	16,861	
⑦	175,119	227,520	287,904	485,261	154,268	
⑧	108,659	129,535	142,511	158,176	83,327	
⑨	54,843	75,837	88,351	149,236	50,657	
⑩	9,792	19,011	26,773	45,859	12,137	
⑪	212,192	271,157	324,338	421,152	172,967	
⑫	99,319	124,717	149,625	210,670	82,636	
부가가치세 합계	1,058,466	1,348,982	1,606,231	2,243,536	895,363	
소득비율	3.93%	3.84%	3.55%	3.18%	3.76%	
소비지출액비율	5.94%	6.04%	6.10%	6.31%	6.01%	

[표 4-9]부터 [표 4-12]까지와 함께 이들 표를 정리한 [그림 4-6]에 의하면 소비지출액이 큰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크게 증가하지만 동(同)부담액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오히려 점차 낮아져서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 부담이 역진적(regressive)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목적으로 제시한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양한 기초생활 필수 재화 및 용역과 국민후생을 위한 재화 및 용역 등에 광범위하게 면세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림 4-5]와 같이 소비지출액 중에서 이러한 재화나 용역의 구입금액(식료품, 주거 및 수도광열비용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 하위 소득계층에서 소비지출액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6] 부가가치세 부담액의 소득분위별 비율 (2006년-2009년 평균)



즉, 부가가치세 부담액의 누진성 여부는 소득계층별로 (가구 부가가치세 부담액÷가구 소득)(이하 “㉠”)의 비율로 확인하고 동(同)비율은 다시 (가구 부가가치세 부담액÷가구 소비지출액)(이하 “㉡”)과 (가구 소비지출액÷가구 소득)(이하 “㉢”)의 비율로 분해할 수 있는데(㉠=㉡×㉢) ㉡의 비율은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림 4-1] 및 [그림 4-3]과 같이 소득계층별로 가구 소득의 편차에 비해서는 가구 소비지출액의 편차가 작아서 ㉢의 비율이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감소하고 동(同)효과가 상반된 ㉡의 효과보다 더욱 현저하기 때문에 ㉡와 ㉢를 결합한 누진성 여부를 측정하는 ㉠의 효과도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⁹⁾.

$$\begin{aligned} & \text{부가가치세 부담액의 누진성} \left(\frac{\text{부가가치세 부담액}}{\text{소득}}, \downarrow \right) \\ & = \left(\frac{\text{부가가치세 부담액}}{\text{소비지출액}}, \uparrow \right) \times \left(\frac{\text{소비지출액}}{\text{소득}}, \downarrow \downarrow \right) \end{aligned}$$

59)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개별 재화나 용역의 거래단계별 과세·면세 여부 및 거래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실증분석의 제약 때문에 면세를 통한 부가가치세의 암묵적 전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했고, 이러한 가정의 결과 소비지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액의 비율(㉡)이 광범위한 면세규정이 적용되는 하위 소득계층에서 낮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면세단계에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이후의 거래단계의 사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다시 징수됨에 따라 거래단계 전체에서의 부가가치세 징수액이 거래단계 전체에서의 부가가치 합계액에 일괄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경우의 세액보다 많아지는 누적효과(cascading effect)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의 분포가 소득계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여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증분석의 결과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나. 주세

가계동향자료의 소분류 소비지출항목들에서 주세의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표 2-4]와 [표 2-5]의 세율을 적용하면 [표 4-13]부터 [표 4-1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13] 2006년의 소득분위별 주세 부담 수준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탁주	소비	419	731	695	956	1,498	1,918
	주세	18	32	30	41	65	83
소주	소비	2,642	3,271	5,181	6,079	8,282	9,811
	주세	1,161	1,438	2,277	2,672	3,640	4,312
맥주	소비	1,651	2,730	3,451	5,381	8,452	10,971
	주세	726	1,200	1,517	2,365	3,715	4,822
기타 주류	소비	979	1,709	2,217	3,534	4,759	5,810
	주세 ⁶⁰⁾	326	568	737	1,175	1,583	1,932
합계	소비	5,691	8,441	11,544	15,950	22,991	28,510
	주세	2,231	3,237	4,561	6,254	9,002	11,149
	비율	39.20%	38.35%	39.51%	39.21%	39.16%	39.11%
소득비율		0.30%	0.16%	0.14%	0.14%	0.14%	0.13%
소비지출액비율		0.16%	0.16%	0.16%	0.17%	0.17%	0.17%
구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탁주	소비	1,734	1,893	1,487	1,575	1,291	
	주세	75	82	64	68	56	
소주	소비	10,323	11,818	11,590	11,466	8,046	
	주세	4,537	5,194	5,094	5,039	3,536	
맥주	소비	13,823	15,927	18,820	20,308	10,151	
	주세	6,076	7,000	8,272	8,926	4,462	
기타 주류	소비	7,695	9,360	12,200	23,132	7,140	
	주세	2,559	3,113	4,057	7,692	2,374	
합계	소비	33,575	38,998	44,097	56,481	26,628	
	주세	13,246	15,389	17,487	21,726	10,428	
	비율	39.45%	39.46%	39.66%	38.47%	39.16%	
소득비율		0.12%	0.10%	0.09%	0.07%	0.10%	
소비지출액비율		0.16%	0.15%	0.13%	0.12%	0.15%	

[표 4-14] 2007년의 소득분위별 주세 부담 수준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탁주	소비	680	1,412	2,035	1,927	3,589	3,740
	주세	29	61	88	83	155	162
소주	소비	5,211	8,219	11,552	14,633	19,784	21,758
	주세	2,290	3,612	5,077	6,432	8,696	9,563
맥주	소비	3,604	6,758	9,118	12,328	17,817	23,782
	주세	1,584	2,970	4,008	5,419	7,831	10,453
기타 주류	소비	1,905	3,268	6,475	7,652	9,183	12,429
	주세	633	1,087	2,153	2,545	3,054	4,133
합계	소비	11,400	19,657	29,180	36,540	50,373	61,710
	주세	4,537	7,730	11,326	14,478	19,735	24,311
	비율	39.80%	39.33%	38.81%	39.62%	39.18%	39.40%
소득비율		0.28%	0.18%	0.16%	0.14%	0.14%	0.12%
소비지출액비율		0.18%	0.19%	0.18%	0.17%	0.17%	0.16%
구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탁주	소비	2,540	4,120	3,257	3,064	2,637	
	주세	110	178	141	133	114	
소주	소비	23,576	24,024	24,884	21,942	17,558	
	주세	10,362	10,559	10,937	9,644	7,717	
맥주	소비	27,273	35,689	38,930	44,914	22,021	
	주세	11,987	15,686	17,110	19,740	9,679	
기타 주류	소비	17,069	21,097	25,598	45,207	14,988	
	주세	5,676	7,016	8,513	15,033	4,984	
합계	소비	70,458	84,931	92,669	115,127	57,204	
	주세	28,135	33,439	36,701	44,550	22,494	
	비율	39.93%	39.37%	39.60%	38.70%	39.32%	
소득비율		0.11%	0.10%	0.09%	0.07%	0.10%	
소비지출액비율		0.15%	0.15%	0.13%	0.12%	0.15%	

60) [표 2-4] 중에서 탁주, 소주 및 맥주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들의 주세율을 평균한 세율을 적용하였다.

[표 4-15] 2008년의 소득분위별 주세 부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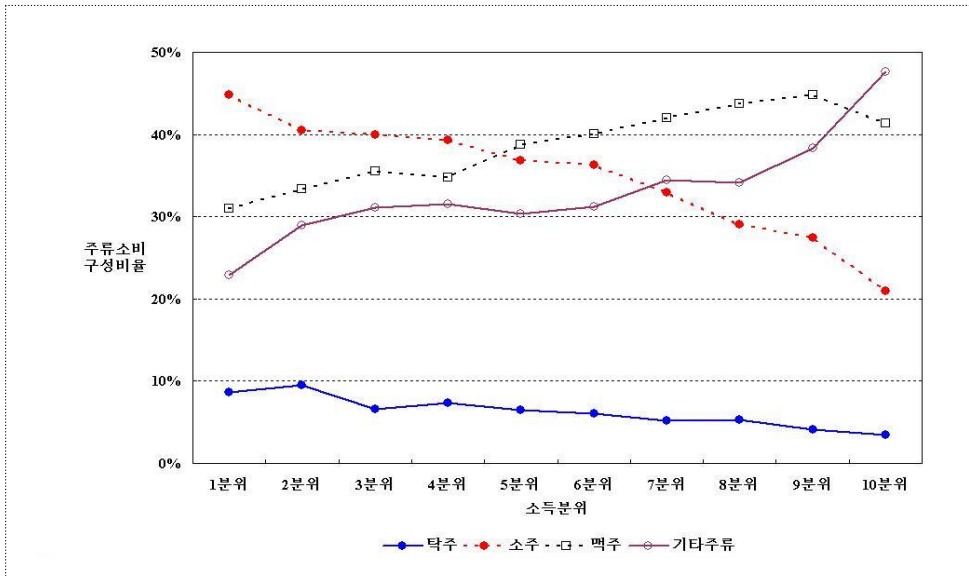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탁주	소비	1,097	1,507	1,712	3,212	3,504	3,425
	주세	47	65	74	139	152	148
소주	소비	4,797	7,995	11,401	16,189	18,536	25,136
	주세	2,108	3,514	5,011	7,115	8,147	11,048
맥주	소비	3,696	6,271	11,485	15,822	19,892	26,982
	주세	1,624	2,756	5,048	6,954	8,743	11,859
기타 주류	소비	1,467	4,116	5,302	7,778	10,159	12,429
	주세	488	1,369	1,763	2,586	3,378	4,133
합계	소비	11,056	19,890	29,900	43,000	52,091	67,972
	주세	4,268	7,705	11,896	16,795	20,420	27,188
	비율	38.60%	38.74%	39.79%	39.06%	39.20%	40.00%
소득비율		0.25%	0.17%	0.16%	0.16%	0.14%	0.14%
소비지출액비율		0.17%	0.17%	0.18%	0.18%	0.17%	0.17%
구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탁주	소비	3,124	4,272	3,764	2,892	2,851	
	주세	135	185	163	125	123	
소주	소비	22,908	25,869	25,971	27,429	18,623	
	주세	10,069	11,370	11,415	12,056	8,185	
맥주	소비	31,330	38,163	43,158	50,938	24,774	
	주세	13,770	16,773	18,969	22,388	10,889	
기타 주류	소비	15,986	16,835	23,864	41,064	13,900	
	주세	5,316	5,598	7,936	13,655	4,622	
합계	소비	73,349	85,140	96,756	122,323	60,148	
	주세	29,290	33,927	38,482	48,225	23,819	
	비율	39.93%	39.85%	39.77%	39.42%	39.60%	
소득비율		0.11%	0.10%	0.09%	0.07%	0.10%	
소비지출액비율		0.15%	0.15%	0.14%	0.13%	0.15%	

[표 4-16] 2009년의 소득분위별 주세 부담 수준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탁주	소비	1,419	2,774	2,065	3,834	3,027	4,532
	주세	61	120	89	166	131	196
소주	소비	6,028	7,770	11,464	16,089	19,043	24,716
	주세	2,649	3,415	5,039	7,072	8,370	10,863
맥주	소비	3,950	6,696	11,175	13,432	22,879	28,135
	주세	1,736	2,943	4,912	5,904	10,056	12,366
기타 주류	소비	2,090	2,098	3,746	6,041	7,783	8,846
	주세	610	671	1,137	1,972	2,469	2,797
합계	소비	13,487	19,338	28,450	39,396	52,731	66,230
	주세	5,057	7,149	11,177	15,113	21,025	26,223
	비율	37.50%	36.97%	39.29%	38.36%	39.87%	39.59%
소득비율		0.30%	0.16%	0.15%	0.14%	0.14%	0.13%
소비지출액비율		0.20%	0.18%	0.19%	0.18%	0.18%	0.18%
구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탁주	소비	5,887	5,487	5,326	6,960	4,131	
	주세	255	238	231	301	179	
소주	소비	27,383	25,451	29,553	27,917	19,541	
	주세	12,035	11,186	12,989	12,270	8,589	
맥주	소비	35,107	41,524	49,205	58,822	27,093	
	주세	15,430	18,250	21,627	25,853	11,908	
기타 주류	소비	10,210	18,325	17,666	35,710	11,251	
	주세	3,269	5,977	5,714	12,012	3,663	
합계	소비	78,587	90,787	101,749	129,408	62,016	
	주세	30,989	35,651	40,560	50,437	24,338	
	비율	39.43%	39.27%	39.86%	38.97%	39.24%	
소득비율		0.12%	0.10%	0.09%	0.07%	0.10%	
소비지출액비율		0.17%	0.16%	0.15%	0.14%	0.16%	

[표 4-13]부터 [표 4-16]까지에 의하면 소비지출액이 큰 상위 소득 계층일수록 주세 부담액이 증가하지만 주류 소비지출액 중에서 주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비교적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그림 4-7]과 같이 소득계층에 따라 주류소비의 구성비율은 차이가 있지만 구성비율이 낮은 탁주 이외의 다른 주류에는 대부분 72%의 동일한 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7] 주류소비의 소득분위별 구성비율 (2006년-2009년 평균)



또한, [표 4-13]부터 [표 4-16]를 정리한 [그림 4-8]과 같이 주세 부담액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점차 낮아져서 소득계층별 주세 부담액이 역진적(regressive)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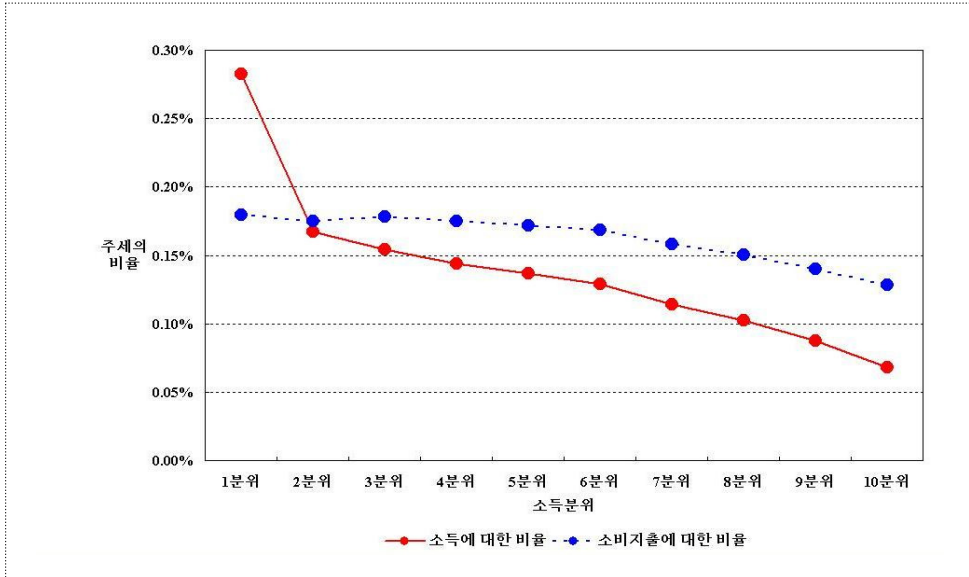
즉, 주세 부담액의 누진성 여부는 소득계층별로 (가구 주세 부담액÷가구 소득)(이하 “a”)의 비율로 확인하고 동(同)비율은 다시 (가구

주세 부담액÷가구 주류소비액(이하 “㉑”), (가구 주류소비액÷가구 소비지출액)(이하 “㉒”) 및 (가구 소비지출액÷가구 소득)(이하 “㉓”)의 비율로 분해할 수 있는데(㉔=㉑×㉒×㉓) ㉑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비교적 일정하지만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그림 4-9]와 같이 소비지출액 중 주류의 비율(㉑)이 감소하고 평균소비성향(㉓)도 감소하기 때문에 ㉑, ㉒ 및 ㉓를 결합한 누진성 여부를 측정하는 ㉔의 효과도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그림 4-8]의 주세의 역진성은 [그림 4-6]의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에 비해 더 뚜렷한데 이것은 앞선 설명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개별 구성비율별로 상반된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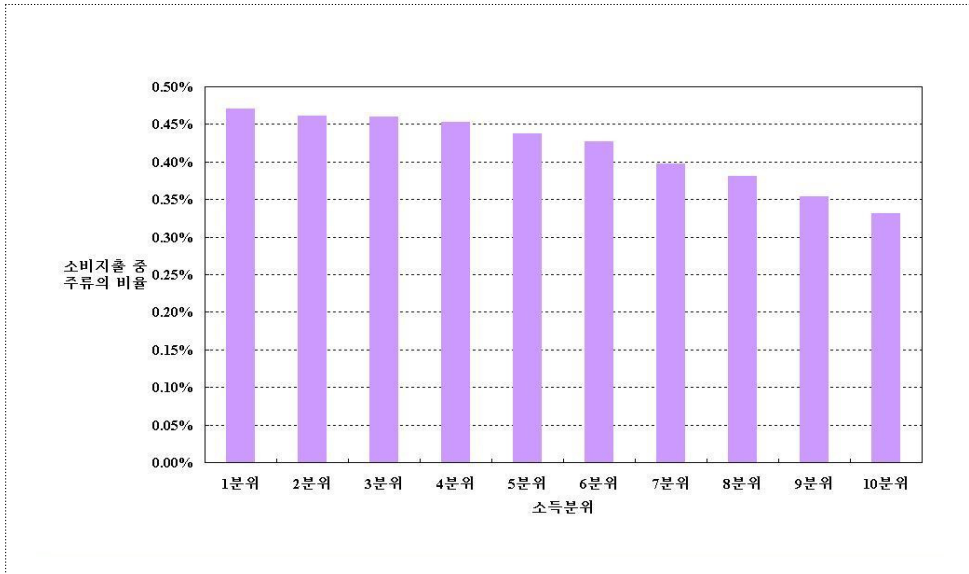
$$\begin{aligned} & \text{주세 부담액의 누진성} \left(\frac{\text{주세 부담액}}{\text{소득}}, \Downarrow \right) \\ & = \left(\frac{\text{주세 부담액}}{\text{주류소비액}}, \text{일정} \right) \times \left(\frac{\text{주류소비액}}{\text{소비지출액}}, \Downarrow \right) \times \left(\frac{\text{소비지출액}}{\text{소득}}, \Downarrow \right) \end{aligned}$$

이와 함께 비교목적으로 제시한 주세 부담액이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부가가치세의 경우와 다르게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완만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주세 부담액÷소비지출액)의 비율을 (주세 부담액÷주류 소비액)(㉑)과 (주류 소비액÷소비지출액)(㉒)의 비율로 분해할 수 있는데(㉑×㉒) 앞선 설명과 같이 ㉑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비교적 일정하지만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㉒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림 4-8] 주세 부담액의 소득분위별 비율 (2006년-2009년 평균)



[그림 4-9] 소비지출액 중 주류의 소득분위별 비율 (2006년-2009년 평균)



다.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

가계동향자료의 소분류 소비지출항목들에서 개별소비세와 교통세의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표 2-7], [표 2-9], [표 2-10] 및 [표 2-11]의 세율을 적용하면 [표 4-18]부터 [표 4-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⁶¹⁾. 단, 개별소비세의 분석은 [표 2-6]의 과세대상 중에서 가계동향조사의 소분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가정용와 차량용 유류 및 차량 구입금액만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⁶²⁾.

중량세가 적용되는 유류제품들에 대한 실증분석에 필요한 연도별 판매가격은 [표 4-17]과 같다⁶³⁾.

[표 4-17] 연도별 유류제품 평균 판매가격*

연도	휘발유 ⁶⁴⁾	경유	등유 ⁶⁵⁾	프로판(LPG)	자동차용 부탄(LPG)
2006년	1,492.43	1,228.17	934.05	861.38	1,280.58
2007년	1,525.87	1,272.73	934.35	918.09	1,324.95
2008년	1,692.14	1,614.44	1,238.64	1,352.10	1,727.81
2009년	1,600.72	1,397.47	975.50	1,042.98	1,419.01

* 휘발유, 경유 및 등유는 원/l, 프로판과 부탄은 원/kg

- 61) [표 2-7] 및 [표 2-11]과 같이 연도중에 세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연도별 평균세율을 안분계산해서 적용하였다.
- 62) “유흥관련 종사자로부터의 서비스에 지불하는 팁을 포함한 비용”인 “유흥비”는 2009년 가계동향자료에만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연도별 비교를 위해 분석대상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 63) 유가정보서비스(opinet.co.kr)에서 검색한 자료이다.
- 64) 고급휘발유 가격은 유가정보서비스에서 2009년부터만 제공하고 있고, 보통휘발유와의 가격 차이가 작기 때문에 일반휘발유의 판매가격만을 반영하였다.
- 65) 실내등유와 보일러등유를 평균한 판매가격이다.

[표 4-18] 2006년의 소득분위별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 부담 수준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가정용	소비	55,486	73,273	101,089	111,658	150,950	169,030
유류	개소세	3,628	4,735	6,588	6,572	9,215	9,897
차량	소비	10,141	4,455	29,277	29,842	114,200	107,379
구입	개소세	611	368	1,688	1,752	7,932	7,347
차량용	소비	42,014	79,843	109,388	153,881	215,641	313,079
유류	교통세	18,601	35,052	48,331	68,705	96,377	139,462
개소·교통세합계		22,840	40,155	56,607	77,028	113,525	156,707
소득비율		3.05%	1.96%	1.77%	1.68%	1.75%	1.82%
소비지출액비율		1.67%	1.95%	2.00%	2.05%	2.11%	2.33%
구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가정용	소비	196,059	229,025	240,278	251,180	157,803	
유류	개소세	10,609	12,580	11,884	10,286	8,599	
차량	소비	146,422	223,018	423,601	881,172	196,951	
구입	개소세	9,889	15,511	30,497	66,165	14,176	
차량용	소비	397,582	541,885	689,289	950,955	349,356	
유류	교통세	176,143	240,783	307,084	430,358	156,090	
개소·교통세합계		196,640	268,875	349,465	506,809	178,865	
소득비율		3.05%	1.96%	1.77%	1.68%	1.75%	
소비지출액비율		2.34%	2.57%	2.69%	2.85%	2.49%	

[표 4-19] 2007년의 소득분위별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 부담 수준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가정용	소비	92,607	134,245	187,545	244,602	279,315	358,841
유류	개소세	7,095	8,530	10,433	14,208	14,438	17,200
차량	소비	12,762	54,221	98,055	99,488	164,471	330,615
구입	개소세	905	3,506	7,449	6,278	11,270	22,226
차량용	소비	90,728	146,289	222,165	328,430	482,897	671,539
유류	교통세	39,465	62,163	95,800	141,621	206,975	284,997
개소·교통세합계		47,465	74,200	113,682	162,108	232,682	324,424
소득비율		2.94%	1.74%	1.62%	1.60%	1.60%	1.65%
소비지출액비율		1.92%	1.79%	1.82%	1.89%	1.98%	2.11%
구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가정용	소비	404,460	433,559	485,924	485,496	310,659	
유류	개소세	23,620	18,765	19,422	15,927	14,964	
차량	소비	395,387	559,011	966,341	1,433,390	411,374	
구입	개소세	29,735	41,868	73,243	109,573	30,605	
차량용	소비	900,980	1,136,909	1,423,029	1,925,835	732,880	
유류	교통세	382,535	484,303	612,985	837,932	314,878	
개소·교통세합계		435,891	544,936	705,650	963,433	360,447	
소득비율		1.71%	1.67%	1.65%	1.42%	1.60%	
소비지출액비율		2.31%	2.40%	2.57%	2.63%	2.34%	

[표 4-20] 2008년의 소득분위별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 부담 수준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가정용	소비	97,069	160,550	206,313	257,157	328,108	376,950
유류	개소세	3,089	3,884	5,329	6,306	8,894	7,603
차량	소비	11,830	27,248	75,373	60,214	117,208	268,974
구입	개소세	968	1,506	6,057	3,876	7,544	17,717
차량용	소비	93,847	162,414	251,259	368,936	547,900	758,407
유류	교통세	34,671	60,259	93,168	134,356	195,998	278,777
개소·교통세합계		38,728	65,650	104,554	144,538	212,436	304,096
소득비율		2.24%	1.46%	1.41%	1.34%	1.40%	1.52%
소비지출액비율		1.56%	1.48%	1.61%	1.58%	1.74%	1.94%
구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가정용	소비	433,912	471,469	504,152	530,431	336,611	
유류	개소세	9,404	8,817	9,416	8,807	7,155	
차량	소비	309,708	686,837	815,416	1,362,689	373,550	
구입	개소세	21,255	43,740	61,244	101,294	26,520	
차량용	소비	1,007,967	1,299,927	1,565,712	2,149,782	820,615	
유류	교통세	373,436	481,141	574,124	808,721	303,465	
개소·교통세합계		404,095	533,699	644,784	918,822	337,140	
소득비율		2.24%	1.46%	1.41%	1.34%	1.40%	
소비지출액비율		2.09%	2.31%	2.30%	2.42%	2.12%	

[표 4-21] 2009년의 소득분위별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 부담 수준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가정용	소비	93,847	162,414	251,259	368,936	547,900	758,407
유류	개소세	2,689	4,254	5,130	6,673	7,659	9,042
차량	소비	42,114	43,616	26,425	183,183	101,277	237,798
구입 ⁶⁶⁾	개소세	3,003	3,109	1,798	12,940	7,076	16,892
차량용	소비	88,972	169,720	250,208	351,650	553,971	766,242
유류	교통세	34,964	68,533	100,444	142,164	225,980	306,959
개소·교통세합계		40,656	75,896	107,372	161,777	240,715	332,893
소득비율		2.44%	1.68%	1.45%	1.51%	1.56%	1.59%
소비지출액비율		1.60%	1.92%	1.81%	1.94%	2.10%	2.25%
구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가정용	소비	1,007,967	1,299,927	1,565,712	2,149,782	820,615	
유류	개소세	8,281	9,446	8,545	8,711	7,043	
차량	소비	444,251	625,422	871,836	2,106,288	468,221	
구입	개소세	31,443	44,366	61,973	149,851	33,245	
차량용	소비	978,312	1,309,854	1,503,823	2,025,544	799,830	
유류	교통세	396,214	530,000	604,581	828,094	323,793	
개소·교통세합계		435,937	583,813	675,100	986,656	364,082	
소득비율		1.62%	1.66%	1.49%	1.40%	1.53%	
소비지출액비율		2.45%	2.61%	2.56%	2.78%	2.44%	

[표 4-18]부터 [표 4-21]까지의 결과는 부가가치세의 경우와 유사하게 소비지출액이 큰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개별소비세와 교통세 부담액도 크게 증가하지만 이들 표를 정리한 [그림 4-10]과 같이 동(同)부담액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오히려

66) 2009년의 가계동향자료에는 승용차의 배기량 크기별 구매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표 2-7]의 개별소비세율 중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였다.

려 대체적으로 낮아져서 소득계층별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 부담이 역진적(regressive)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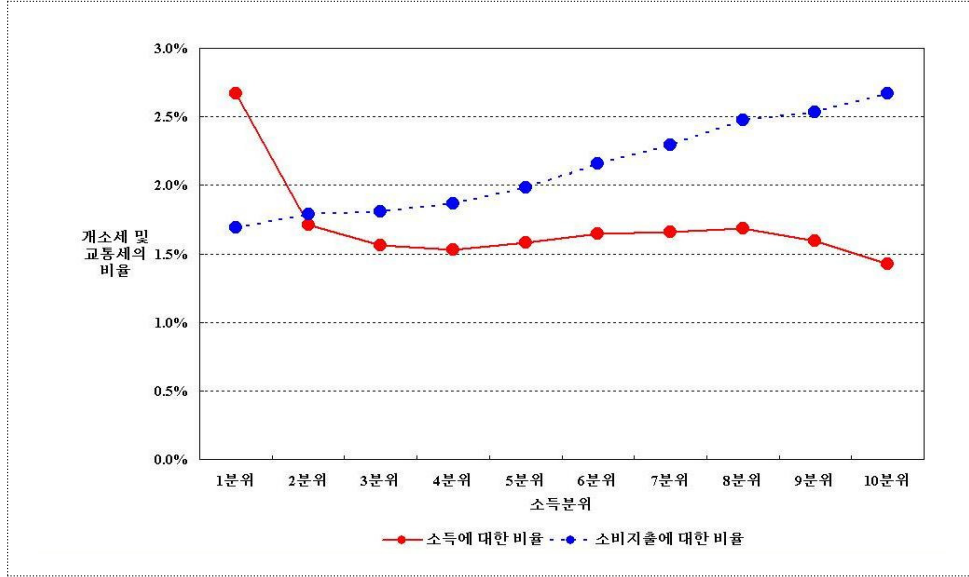
즉,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 부담액의 누진성 여부는 소득계층별로 (가구 개선세·교통세 부담액÷가구 소득)(이하 “㉠”)의 비율로 확인하고 동(同)비율은 다시 (가구 개선세·교통세 부담액÷가구 과세대상 소비지출액)(이하 “㉡”), (가구 과세대상 소비지출액÷가구 소비지출액)(이하 “㉢”) 및 (가구 소비지출액÷가구 소득)(이하 “㉣”)의 비율로 분해할 수 있는데(㉠=㉡×㉢×㉣) ㉡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비교적 일정하고,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 과세대상 소비지출액(유류 및 차량구입금액)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평균소비성향(㉣)이 더욱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 ㉢ 및 ㉣를 결합한 누진성 여부를 측정하는 ㉠의 효과는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egin{aligned} & \text{개별소비세 및 교통세 부담액의 누진성} \left(\frac{\text{개선세 등}}{\text{소득}}, \downarrow \right) \\ & = \left(\frac{\text{개선세 등}}{\text{과세대상 소비지출액}}, \text{일정} \right) \times \left(\frac{\text{과세대상 소비지출액}}{\text{소비지출액}}, \uparrow \right) \\ & \quad \times \left(\frac{\text{소비지출액}}{\text{소득}}, \downarrow \downarrow \right) \end{aligned}$$

이와 함께 비교목적으로 제시한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 부담액이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개선세·교통세 부담액÷소비지출액)의 비율을 (개선세·교통세 부담액÷과세대상 소비지출액)(㉡)과 (과세대상 소비지출액÷소비지출액)(㉢)의 비율로 분해할 수 있는데(㉡×㉢) 앞선 설명과 같이 ㉡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비교적 일정하지만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다.

[그림 4-10] 개소·교통세 부담액의 소득분위별 비율 (2006년-2009년 평균)



라. 간접세의 전체적인 소득계층별 부담수준

개별세목에 대한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서 정리하면 [표 4-22] 부터 [표 4-2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22] 2006년의 소득분위별 간접세 부담 수준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부가가치세	82,788	125,213	173,546	229,903	336,556	422,364
주세	2,231	3,237	4,561	6,254	9,002	11,149
개소·교통세	22,840	40,155	56,607	77,028	113,525	156,707
간접세 합계	107,858	168,605	234,714	313,185	459,083	590,220
소득비율	14.41%	8.24%	7.34%	6.82%	7.07%	6.87%
소비지출액비율	7.91%	8.19%	8.28%	8.33%	8.54%	8.76%
구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부가가치세	533,263	675,192	857,317	1,215,926	465,207	
주세	13,246	15,389	17,487	21,726	10,428	
개소·교통세	196,640	268,875	349,465	506,809	178,865	
간접세 합계	743,150	959,456	1,224,270	1,744,461	654,500	
소득비율	6.56%	6.43%	6.17%	5.39%	6.29%	
소비지출액비율	8.84%	9.16%	9.43%	9.82%	9.12%	

[표 4-23] 2007년의 소득분위별 간접세 부담 수준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부가가치세	148,261	252,487	374,113	520,832	716,935	955,224
주세	4,537	7,730	11,326	14,478	19,735	24,311
개소·교통세	47,465	74,200	113,682	162,108	232,682	324,424
간접세 합계	200,262	334,417	499,121	697,418	969,353	1,303,959
소득비율	12.39%	7.86%	7.12%	6.88%	6.67%	6.65%
소비지출액비율	8.09%	8.08%	7.97%	8.15%	8.25%	8.47%
구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부가가치세	1,181,016	1,456,852	1,806,350	2,478,521	989,059	
주세	28,135	33,439	36,701	44,550	22,494	
개소·교통세	435,891	544,936	705,650	963,433	360,447	
간접세 합계	1,645,042	2,035,227	2,548,701	3,486,504	1,372,000	
소득비율	12.39%	7.86%	7.12%	6.88%	6.67%	
소비지출액비율	8.71%	8.96%	9.27%	9.53%	8.89%	

[표 4-24] 2008년의 소득분위별 간접세 부담 수준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부가가치세	146,204	264,530	391,580	542,657	732,714	970,279
주세	4,268	7,705	11,896	16,795	20,420	27,188
개소·교통세	38,728	65,650	104,554	144,538	212,436	304,096
간접세 합계	189,200	337,885	508,030	703,989	965,570	1,301,563
소득비율	10.93%	7.51%	6.87%	6.53%	6.38%	6.50%
소비지출액비율	7.64%	7.61%	7.82%	7.71%	7.93%	8.28%
구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부가가치세	1,215,184	1,474,645	1,810,591	2,541,096	1,008,948	
주세	29,290	33,927	38,482	48,225	23,819	
개소·교통세	404,095	533,699	644,784	918,822	337,140	
간접세 합계	1,648,568	2,042,270	2,493,857	3,508,143	1,369,908	
소득비율	6.38%	6.14%	5.65%	4.97%	5.87%	
소비지출액비율	8.51%	8.85%	8.90%	9.24%	8.62%	

[표 4-25] 2009년의 소득분위별 간접세 부담 수준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부가가치세	142,246	221,445	327,566	481,440	660,505	863,211
주세	5,057	7,149	11,177	15,113	21,025	26,223
개소·교통세	40,656	75,896	107,372	161,777	240,715	332,893
간접세 합계	187,960	304,490	446,115	658,330	922,245	1,222,327
소득비율	11.29%	6.76%	6.02%	6.14%	5.99%	5.84%
소비지출액비율	7.42%	7.71%	7.53%	7.89%	8.05%	8.27%
구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부가가치세	1,058,466	1,348,982	1,606,231	2,243,536	895,363	
주세	30,989	35,651	40,560	50,437	24,338	
개소·교통세	435,937	583,813	675,100	986,656	364,082	
간접세 합계	1,525,393	1,968,446	2,321,891	3,280,628	1,283,783	
소득비율	5.67%	5.61%	5.14%	4.65%	5.39%	
소비지출액비율	8.56%	8.81%	8.82%	9.23%	8.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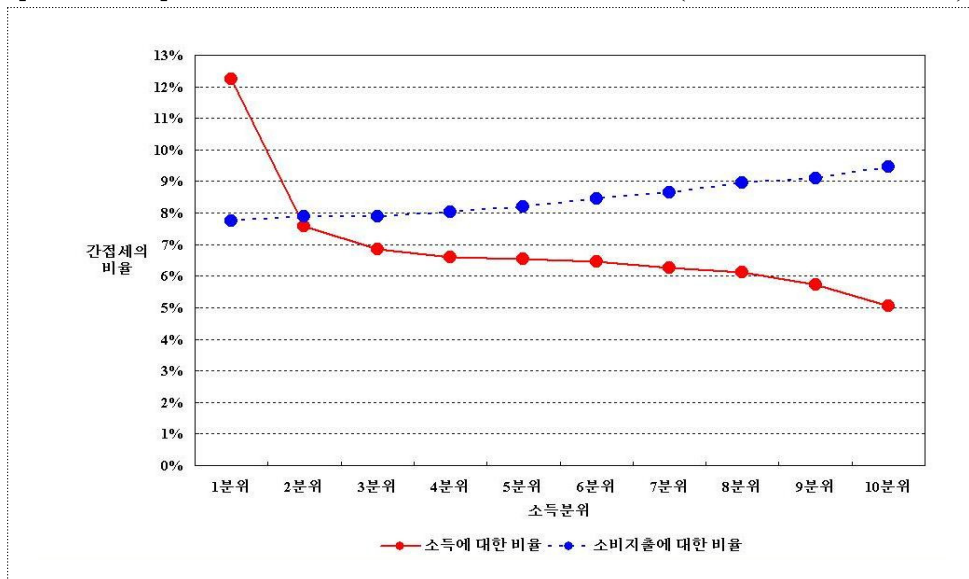
[표 4-22]부터 [표 4-25]까지의 결과는 전체적인 간접세 부담도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경우와 유사하게 소비지출액이 큰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크게 증가하지만 이들 표를 정리한 [그림 4-11]과 같이 동(同)부담액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오히려 대체적으로 낮아져서 소득계층별 간접세 부담이 역진적(regressive)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간접세 부담이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개별 세목의 경우와 대개 마찬가지로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간접세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기 때문에⁶⁷⁾ [그림 4-6]의 부가가치세의 분석결

과가 전체적인 간접세의 분석결과에도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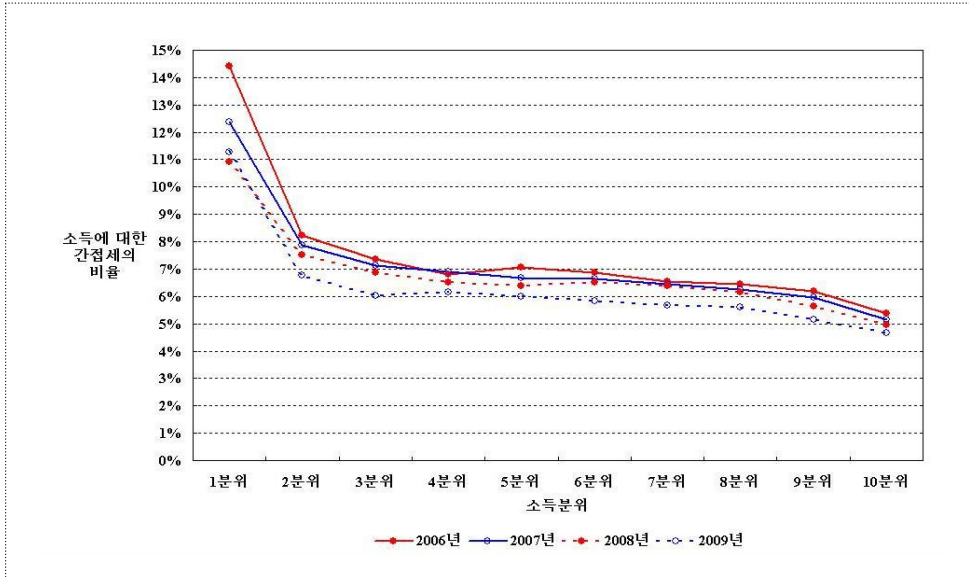
[그림 4-11] 간접세 부담액의 소득분위별 비율 (2006년-2009년 평균)



[그림 4-11]에서 간접세 부담액의 누진성(소득에 대한 간접세의 비율)을 연도 및 소득계층별로 구분해서 나타내면 [그림 4-12]와 같다.

- 67) [표 4-25]의 결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간접세 중에서 부가가치세의 비율이 절대적이지는 않는데 이것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 대상이 가계단위의 소비지출액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비지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표 4-25]에서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기백 등(2006)도 이와 유사한 결과와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4-12] 연도 및 소득분위별 간접세 부담액의 비율



[그림 4-12]의 결과는 개별 연도별로도 간접세의 역진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득에 대한 간접세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림 4-1]과 같이 매년 소득이 증가하지만 증가하는 소득이 전액 소비·지출되지는 않고 저축되는 부분의 비율이 매년 커지기(즉, 평균소비성향이 체감하기⁶⁸⁾) 때문인 것이다.

즉, 간접세 부담액의 기간별 추세도 연도별 (가구 간접세 부담액÷가구 소득)(이하 “a”)의 비율로 확인하고 동(同)비율은 다시 (가구 간접세 부담액÷가구 소비지출액)(이하 “b”)과 (가구 소비지출액÷가구 소득)(이하 “c”)의 비율로 분해할 수 있는데(a=b×c) 연도별로 약

68) 평균소비성향이 체감하는 경우에는 한계소비성향(추가적인 소득 중에서 소비·지출되는 금액의 비율)도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1보다 작아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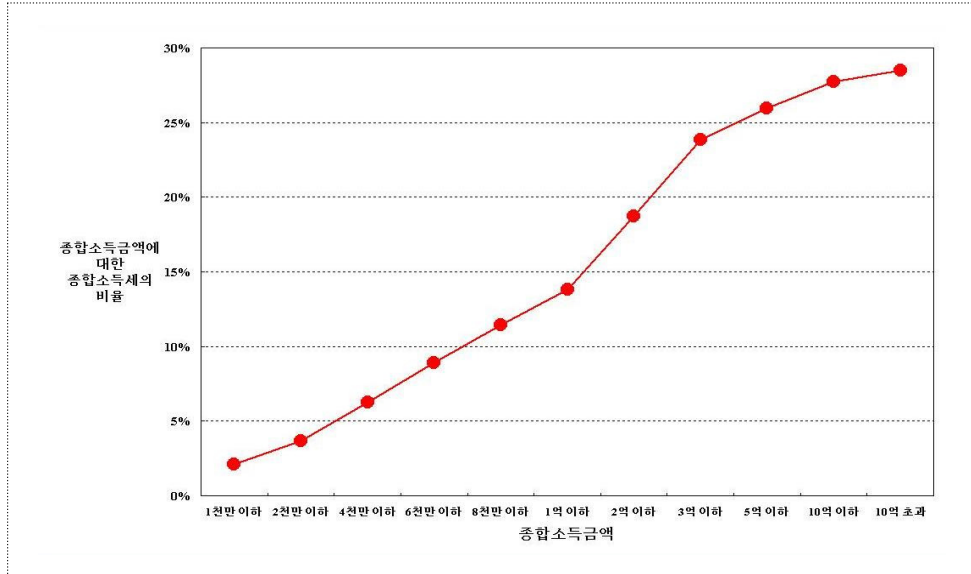
간의 세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액에 대한 간접세 부담액의 비율(㉞)은 일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연도별 소득의 증가에 따른 평균소비성향(㉟)의 감소에 따라 기간 경과에 따른 간접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egin{aligned} & \text{부가가치세 부담액의 누진성} \left(\frac{\text{부가가치세 부담액}}{\text{소득}}, \text{기간별 체감} \right) \\ &= \left(\frac{\text{부가가치세 부담액}}{\text{소비지출액}}, \text{기간별 일정} \right) \times \left(\frac{\text{소비지출액}}{\text{소득}}, \text{기간별 체감} \right) \end{aligned}$$

마. 직접세의 소득계층별 부담수준과의 비교

[그림 4-11]의 소득계층별 간접세 부담액의 비율(간접세 부담액÷소득)을 직접세인 종합소득세의 소득계층별 부담액의 비율(종합소득세 부담액÷종합소득금액)과 비교하면 [그림 4-13]과 같다.

[그림 4-13] 종합소득금액 규모별 종합소득세 부담액의 비율 (2008년-2009년 평균)



즉, [그림 4-13]의 분석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 대상인 가계동향자료와 같이 개인소득을 대상으로 종합소득금액 규모별로 종합소득세 부담액의 비율을 분석한 것이다. 이상의 분석과 같이 정확하게 10분위로 구분한 것은 아니고 국세통계연보에서 분류한 종합소득금액의 규모별로 소득계층을 구분한 것이지만, [그림 4-13]은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간접세 부담액의 비율이 낮아지는 [그림 4-11]의 결과와는 전혀 다르게 직접세인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누진세율 등의 영향으로 인해 조세부담에 뚜렷한 누진성(progressivity)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간접세의 소득계층별 부담수준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소득과 함께 소비지출액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실증분석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 등으로 인해 선행연구도 거의 발견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소득계층별로 간접세(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부담수준을 실증 분석하였다.

먼세를 통한 부가가치세 부담의 암묵적 전가가 발생하지 않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비해 충분히 크다는 것 등의 가정을 바탕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부담액과 그 합계액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작아져서 일관된 역진성(regressivity)을 나타냈다.

둘째, 보충적으로 가구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면 주세의 경우에는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작아지지만 나머지 조세들은 상위 소득계층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류 구입금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하위 소득계층일수록 높아지는 것 때문이다.

셋째, 간접세 부담액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역진성을 나타내는 것은 연구대상 연도에 매년 발생했지만 간접세 부담액의 비율은 연도별로 점차 감소했는데 이것은 연도별로 가구 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평균소비성향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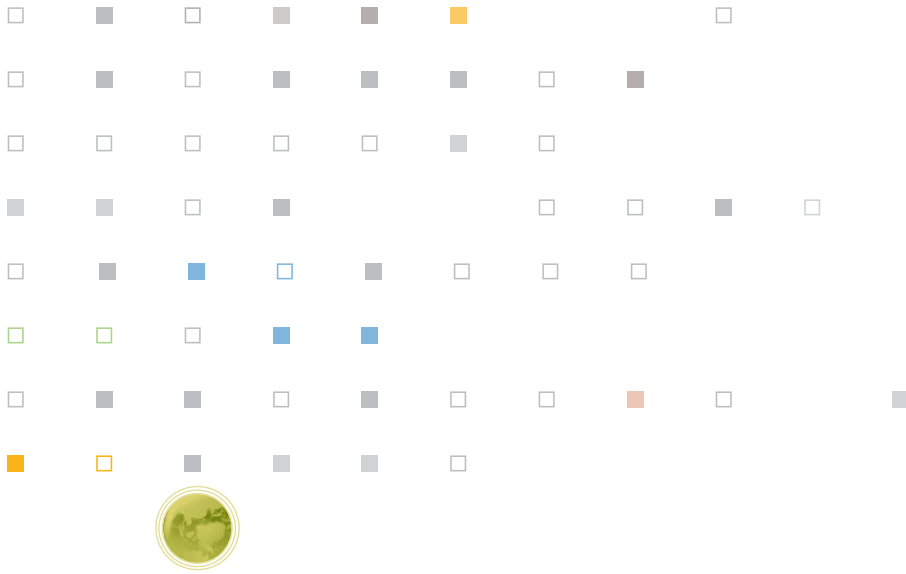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직접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액과 비교하면 일관된 역진성을 나타내는 간접세와 다르게 종합소득세 부담액의 비율은 상위 소득계층에서 현저하게 높아져서 뚜렷한 누진성(progressivity)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해 최근 재정건전성의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재정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간접세제 개편방안이 조세부담의 공정성 측면에서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이후의 조세제도의 개편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래의 조세제도 개편을 논의할 때에는 편의적인 간접세의 증세로 인한 조세부담의 공정성의 악화와 소득계층간의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직접세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0.
-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0, 171-222.
- 김우철·민희철·박상원, 「소득재분배정책을 위한 동등화 지수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22-24.
- 박기백·김형준, 「현물급여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7, 3-15.
- 박기백·성명재·김종면·김진, 「사회분야 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 현물급여 및 간접세 포함」, 한국조세연구원, 2006, 156-162.
-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1995, 397-403.
- 전병욱·최원욱, “최저한세가 기업의 조세부담의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36(4), 2007, 981-1007.
- 정운오·전병욱, “소득공제의 소득재분배 및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성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금저축 등에 대한 공제와 교육비공제를 중심으로”, 통계청, 통계연구 15(2), 2010, 25-50.
- 최명근·나성길, 「부가가치세법론」, 세경사, 2007, 16-26.
- Hagenaars, A., K. de Vos and M. A. Zaidi, Poverty statistics in the late 1980s: Research based on micro-data,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uxembourg, 1994.
- Nelson, J. A., “Household economies of scale in consumption: Theory and evidence”, *Econometrica* 56, 1988, 1301-1304.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Revenue Statistics: SPECIAL FEATURE: TAXES PAID ON SOCIAL TRANSFERS, 2007.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소득계층별 실질부담수준